

---

**한 · 미 FTA,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

**2011. 12.**

**외 교 통 상 부  
(통상교섭본부)**



# 목 차

<b>제 1 편 : 한 · 미 FTA 바로알기</b> .....	<b>1</b>
<b>I. 한 · 미 FTA의 경과 및 기대효과</b> .....	<b>3</b>
1. 협상경과 .....	3
2. 양국 비준경과 .....	3
3. 기대효과 .....	4
<b>II. 한 · 미 FTA의 경제적 효과</b> .....	<b>5</b>
1. 한 · 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	5
2. 기발효 FTA의 실증적 경제적 효과 .....	6
<b>III. 한 · 미 FTA 반대측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b> .....	<b>8</b>
1. 반대측 주장 : “추가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고, 재재협상이 필요하다” .....	8
<b>[10개의 재재협상안 주장에 대한 정부입장]</b>	
① 중소기업 보호장치 확보 (유통법, 상생법의 서비스 유보 조항 포함) 주장 .....	10
②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 안전성 확보 주장 .....	13
③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주장 .....	16
④ 의약품 분야 허가 · 특허 연계제도 폐지 주장 .....	18
⑤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주장 .....	22
⑥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주장 .....	26
⑦ 투자자 · 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주장 .....	29
⑧ 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 전환 (네거티브 방식⇒포지티브 방식) 주장 ..	34
⑨ 자유화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주장 .....	37
⑩ 농축산업 주요품목(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주장 .....	40

# 목 차

2. 반대측 주장 : “한·미 FTA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협정이다.”	42
① 한미 FTA와 미 연방법·주법과의 관계	43
② 우리 투자자의 미국 법원 제소가 불가하다는 주장	46
③ 우리 핵심 이익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	48
3. 반대측 주장 : “농축수산/중소기업 분야의 피해대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51
4. 반대측 주장 : “ISD는 독소조항으로 삭제가 필요하다.”	52
<b>IV. 우리의 공공정책 자율권 현황</b>	<b>53</b>
1. 협정의 적용배제	53
2. 예외	54
3.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55
4. 현재유보·미래유보	56
(참고 1) 한국의 투자·서비스 분야 현재유보 47개	57
(참고 2) 한국의 투자·서비스 분야 미래유보 44개	59
(참고 3) 한국의 금융 분야 현재·미래유보 18개	61
<b>V. 한·미 FTA 알기 쉬운 100문 100답</b>	<b>62</b>
1. 한·미 FTA 오해와 진실 (60개) : ISD, 공공요금 민영화, 농업, 의료 및 복지, 경제효과	62
2. 한·미 FTA의 혜택 (40개) : 기업, 소비자	73
<b>VI. 한·미 FTA 비준완료(11.22)후 업계 성명</b>	<b>80</b>

# 목 차

## 제 2 편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 … 89

### I. ISD 제도란 ? … 91

### II. 한·미 FTA의 ISD 제도는 어떤 모습인가 ? … 93

1. 한·미 FTA의 ISD 개요 … 93

2. 실제적 요건 … 94

3. 중재 절차 … 98

(참고 4) ISD 비교 (NAFTA, 미 2004모델 BIT, 한·미FTA)

### III. ISD에 대한 오해, 진실은 ? … 103

1. ISD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 103

2. 국가의 공공정책 자율권이 훼손된다? … 105

3. 중재 판정부는 중립적인가? … 107

4. 사법주권이 훼손된다? … 109

5. 투자자 제소시 중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나? … 110

6. 환경정책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111

7. 간접수용으로 ISD 제소하면 막을 방법 있나? … 112

8. BIT보다 FTA에서 ISD의 제소가 더 많다? … 114

9. 호주-미국 FTA에 ISD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 116

10.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던데? … 118

(참고 5) 열린우리당 ISD 협상결과 평가보고서(07.7월) 평가내용

(참고 6) 우리의 BIT 체결현황

(참고 7) 기체결 FTA의 ISD 포함사항

(참고 8) 한·미간 투자통계

# 목 차

## 제 3 편 : 서비스·투자/중소기업 분야 서한교환 …… 125

### I. 추진 배경 및 경위 …………… 127

### II. 서한교환 주요 내용 …………… 127

1.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 127

2.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 128

### III. 의의 및 향후 계획 (안) …………… 129

1.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 129

2.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 129

#### (참고 9)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1. 서한(우리측 제안 및 미측 회답) 한글본 및 영어본

2. 서한 개요 요약표

3. 한·미간 서비스·투자 교육 현황

#### (참고 10)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1. 서한(우리측 제안 및 미측 회답) 한글본 및 영어본

2. 서한 개요 요약표

3.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

4. 중소기업의 경제비중

# 목 차

<b>제 4 편 : 한·미 주요 통계</b> .....	<b>153</b>
<b>I. 한·미 주요 경제 통계</b> .....	<b>155</b>
1. 한·미 주요 경제지표 비교 .....	155
2. 우리나라 주요 경제지표 .....	156
3.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	157
<b>II. 한·미간 교역통계</b> .....	<b>158</b>
1. 우리나라 주요 상품교역 현황 .....	158
2. 한·미 서비스·투자 통계 .....	159
3. 한·미 10대 교역품목 현황 .....	160
<b>III. 주요국과의 교역통계</b> .....	<b>161</b>
1.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통계 .....	161
2. 미국의 주요국간 통계 .....	162

☞ 이 자료는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http://www.fta.go.kr)) 내 한·미 FTA > 참고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제1편 한·미 FTA 바로알기

- I. 한·미 FTA의 경과 및 기대효과
- II.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III. 한·미 FTA 반대측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
- IV. 우리의 공공정책 자율권 현황
- V. 한·미 FTA 알기 쉬운 100문 100답
- VI. 한·미 FTA 비준완료(11.22)후 업계 성명



# I 한·미 FTA의 경과 및 기대효과

## 1 협상경과

- 2006.6.5~2007.4.2 8차례 공식 협상 및 고위급 협상 개최
- 2007. 4. 2 협상 타결(서울) 및 2007.6.30 협정 서명(워싱턴)
- 2008. 2.25 이명박 정부 출범  
※ 2009.1.20 오바마 행정부 출범
- 2010.12. 3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 2 양국 비준경과

### 1] 우리측 비준경과

- 2011.6.3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6.24 이후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운영 (8차례 회의)  
※ 추가협상 영향 분석, 전반적 경제적 효과 재분석, 농축산 피해대책 보완 등 논의
  - 10.17, 20-22, 24 외통위 주관 한·미 FTA 토론회(1,500분) 개최
- 2011.11.22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 미측 비준경과

- 2011.10.12 한·미 FTA 이행법안 미 상·하원 최종 통과
  - 하원 (찬성 278, 반대 151), 상원 (찬성 83, 반대 15)  
※ 미국이 체결한 FTA중 최단기간내 상하원 통과 (공식제출후 회기일 6일 소요)
- 2011.10.21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 □ 우리 '경제영토'의 확장

- 미국, EU와의 FTA를 통해 아시아(아세안, 인도), 유럽, 아메리카 3개 대륙을 잇는 경제영토의 확장 (세계 경제규모 대비 60.9%로 세계 3위, ①칠레, ②멕시코)

### □ 단기·장기적 경제적 혜택

- 발효 후 10년간 GDP 5.7% 증가, 35만개 일자리 창출 전망  
(2011.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 합동 분석 결과)  
☞ 상세 「III.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서 후술
- 관세 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미국 시장 접근성이 개선 (우리의 대미국 수출품목 95.7%가 5년 이내 무관세)
-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  
※ 한·EU FTA 발효 후, EU산 소비재의 소매가격이 평균 6.4% 인하 (8.9, 무역협회)

### □ 한·미 양국간 “다원적 전략동맹”의 한 축을 구축

-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하여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도약 기대

### □ 최근 세계 경제위기 충격의 완화에 기여

- 최근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수출여건 악화, 보호주의 확산 등의 악조건을 극복하는 활력소를 우리 경제에 제공

## II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 ① 경제성장 및 후생수준

- (GDP) 실질 GDP는 5.6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후생 수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으로 단기 5.3억\$~장기 321.9억\$의 소비자후생 증가

<한·미 FTA가 실질 GDP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구 분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 축적(장기)	
		생산성 증대 미고려	생산성 증대 고려
실질 GDP(%)	0.02	0.48	5.66
후생 수준(억\$)	5.3	25.5	321.9

#### ② 고용

- 한·미 FTA 이행으로 취업자가 3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한·미 FTA의 고용효과(천명) >

구 분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효율개선 (단기)	자본축적	
		생산성 증대 미고려(중기)	생산성 증대 고려(장기)
고용창출 효과	4.3	40.6	351.3
· 제조업	2.3	14.8	81.6
· 농림어업	△0.7	△2.0	0.5
· 서비스업	2.7	27.8	269.2

#### ③ 수출입 및 무역수지

- 한·미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對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7억\$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
- 對미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1.4억\$ 흑자가 확대

<한·미 FTA에 따른 수출입·무역수지 증감(15년간 연평균, 백만\$) >

구 분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제조업	3,167	1,285	138	711	3,029	573
농업	-	-	264	424	△264	△424
수산업	-	0.8	-	11.8	-	△11.0
합 계	3,167	1,285	402	1,147	2,765	138

## 2 기발효 FTA의 실증적 경제적 효과

◇ FTA 발효전 발표하는 경제적 효과 예상치는 특정 가정하에서 경제분석 모델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므로 발효후 실제로 해당수치가 그대로 실현된 다기 보다는 대체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

- 이미 발효중인 FTA들의 발효후 교역규모 확대와 수출 증가를 사후적으로 확인한 결과, 당초 예상치 보다는 실증적으로 훨씬 높은 성과를 시현했다는 사실이 한·미 FTA를 포함한 FTA의 효과를 논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기발효 FTA(칠레 7년차, 싱가포르 5년차, EFTA 4년차, ASEAN 4년차, 인도 1년차)는 발효전 예상치보다 높은 교역규모 및 수출 확대 효과 시현

- 한·EU FTA (2011.7월 발효) 및 한·페루 FTA(2011.8월 발효)도 발효후 단기간동안 유럽발 재정위기 등 악재 속에서도 긍정적 효과 달성

(단위: 백만달러)

대상국 (발효일)	구분	발효 1년전	발효 1년차	발효 3년차	발효 4년차	발효 5년차	발효 7년차
칠레* (2004.4)	수출	524	708	1,566	3,115	3,032	2,947
	수입	1,328	1,934	3,813	4,184	4,127	4,221
	교역액	<b>1,852</b>	<b>2,642</b>	<b>5,379</b>	<b>7,299</b>	<b>7,159</b>	<b>7,168</b>
	무역수지	<b>-804</b>	<b>-1,226</b>	<b>-2,247</b>	<b>-1,069</b>	<b>-1,095</b>	<b>-1,274</b>
싱가포르 (2006.3)	수출	7,407	9,489	16,293	13,617	15,244	-
	수입	5,318	5,887	8,362	7,872	7,850	-
	교역액	<b>12,725</b>	<b>15,376</b>	<b>24,655</b>	<b>21,489</b>	<b>23,094</b>	-
	무역수지	<b>2,089</b>	<b>3,602</b>	<b>7,931</b>	<b>5,745</b>	<b>7,394</b>	-
EFTA** (2006.9)	수출	1,730	1,123	1,956	3,522	-	-
	수입	2,195	3,554	4,548	5,699	-	-
	교역액	<b>3,925</b>	<b>4,677</b>	<b>6,504</b>	<b>9,221</b>	-	-
	무역수지	<b>-465</b>	<b>-2,431</b>	<b>-2,592</b>	<b>-2,177</b>	-	-
ASEAN (2007.6)	수출	32,066	38,749	40,979	53,195	-	-
	수입	29,743	33,110	39,053	44,098	-	-
	교역액	<b>61,809</b>	<b>71,859</b>	<b>75,032</b>	<b>97,293</b>	-	-
	무역수지	<b>2,323</b>	<b>5,639</b>	<b>1,926</b>	<b>9,097</b>	-	-
인도 (2010.1)	수출	8,013	11,435	-	-	-	-
	수입	4,142	5,674	-	-	-	-
	교역액	<b>12,155</b>	<b>17,109</b>	-	-	-	-
	무역수지	<b>3,871</b>	<b>5,761</b>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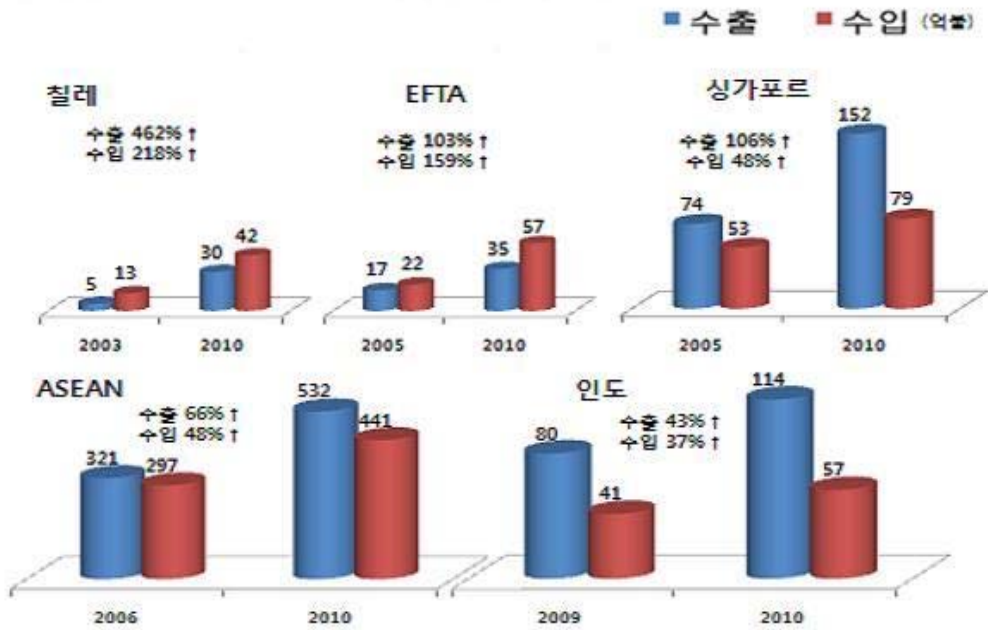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 대칠레 무역적자의 지속은 주로 우리 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구리(copper) 제품의 가격상승과 수입증가에 기인

\*\* 대EFTA 무역적자의 지속 증가추세는 우리나라가 EFTA에서 주로 부품 및 제조용 기계류를 수입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양자간 무역구조로 인한 것으로 이는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을 EFTA 국가로 대체하는 효과 때문

## 《기발호 5개 FTA의 수출입 증가 추세》

(발효년도 → 2010년도)



### III 한·미 FTA 반대측 주장에 대한 정부입장

1

**반대측 주장 : “추가협상으로 인해 이익 균형이 무너졌고, 재재협상이 필요하다”**

- 추가협상은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극히 한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체적인 이익균형은 여전히 유효
  - 영세한 우리 양돈업체와 중소 제약업체를 위한 추가 보호장치도 확보
- 이해당사자인 우리 자동차업체와 중소 부품업체들이 추가협상 타결을 환영
  - ※ 추가협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7.22), 자동차 분야의 경우 대미 흑자가 원협정보다 연간 0.5억불 감소하지만, 여전히 연간 4.9억불의 흑자 증가 기대
- 따라서, 민주당 등 야당 및 시민단체의 재재협상 요구(10개)는 비현실적으로, 한·미 FTA 폐기와 동일한 주장
  - 미측 비준절차가 완료(10.12)되고 우리 상임위에서 비준동의안이 심의 중인 현 시점에서 재재협상 요구는 결국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주장
  - 재재협상 요구내용 10개중 9개는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

#### < 중점 제기 사항 >

- ① **(중소상인 보호장치)** ⇒ **(정부 입장)** 서비스 시장개방은 WTO 출범 전부터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적 정책방향임. 한·EU FTA 비준과정에서 유통법·상생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내 법령을 정비한 바 있으며, 이해당사국에 대한 설득노력과 더불어 동 법령을 우리의 대외적 약속과 충돌을 최소화 방향으로 운영 필요
- ②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폐지)** ⇒ **(정부 입장)** ISD는 글로벌 스탠다드 중 하나이며, 국내 투자유치와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최근 5년간 한미간 투자규모 : 한→미 203억불, 미→한 88억불)
- ③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 **(정부 입장)**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 FTA 협정문 및 미 행정조치계획(SAA)에 명시되어 있듯이 협정 발효 1년후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구체적 요건을 논의 예정




- 재재협상 요구 중 상당수는 우리의 기존 개방정책에 따라 WTO와 발효중인 FTA에서 이미 약속한 것들로서 한·미 FTA만 수정하는 것은 무의미
- 야당 요구사항중 2개 국내 보완대책 관련, 여야정간 생산적인 협의중
  - 통상절차법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 10.25 외통위 의결
  -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지원요건 완화  
(생산액·매출액 감소기준 : 25%→20%, 9.8부터 시행중, 지경부·기재부)

## [ 10개의 재재협상안 주장에 대한 정부입장 ]

### (1) 중소기업 보호장치 확보 주장

**(요구)** 중소기업 보호장치 확보를 위해 한·미 FTA 유보(현재유보, 미래유보)를 수정하여 중소기업적합 업종과 유통법·상생법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한·미 FTA 유통 분야 약속은 1980년대부터 추진해온 우리나라의 “개방을 통한 유통산업 발전” 정책의 소산  한·미 FTA 수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과 유통법·상생법은 한·미 FTA만 수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관련 분야는 우리 정부의 기존 개방정책에 따라 WTO 서비스 협정(GATS)과 이미 발효된 여타 FTA를 통해 개방되어 있음. 따라서, 한·미 FTA만 수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주장 1) :** 중소기업·중소상인에 대한 현재유보, 미래유보를 하지 않아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및 유통법, 상생법의 한·미 FTA 협정 위반 가능성 존재

□ 한·미 FTA 서비스·투자 관련 양허는 16년전 발효된 WTO 서비스 협정(GATS, 1995.1.1 발효)의 우리 양허표와 여타 FTA에서의 우리 개방수준에 기초하고 있음.

○ 따라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및 「유통법」, 「상생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의 불합치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WTO 규범 등 여타 협정상 우리의 국제 의무와의 불합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한·미 FTA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함.

□ 동 사안의 본질은 중소기업이나 전통 소상공인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에 관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에 약속한 국제의무에 대한 불합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법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최근 국회에 발의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관련 법안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 제출된 내용대로라면 WTO GATS, 기체결 FTA 및 투자보장협정 전반에 걸쳐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임.

- (유통법·상생법) 한·미 FTA 뿐 아니라 WTO 서비스협정(GATS) 및 여타 FTA의 서비스 양허와도 불합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추진해온 개방을 통한 유통산업 발전 정책 방향에 따라 WTO 서비스 협정에서부터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조치권을 유보하지 않았음.

- 따라서, 사업조정제도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마트 등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여 WTO GATS 및 FTA의 시장접근 의무 위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동 제도를 운용해가는 것이 중요함.

**(주장 2) : 동반성장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으로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 적합업종·품목지정은 한·미 FTA 협정 위반**

-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형식상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민간단체이므로, 한·미 FTA 제11.1조 또는 제12.1조상의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은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한·미 FTA 협정 위반 소지도 없음.

-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법인격 없는 민간단체(2010.12 출범)
  - 민간기업간 협의를 통해 9.27 중소기업 적합업종 16개를 선정

**(주장 3)**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어 미국 투자자가 ISD를 제기 가능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우리 대기업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가 ISD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서, 현 단계에서 그 제기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특히,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에 간접수용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FTA상의 판단 기준인 경제적 효과, 정부 조치의 성격, 합리적 기대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 한·미 FTA 투자챕터는 수용을 하더라도 공공목적을 위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과, 신속·적절·효과적 보상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제12.6조).
- 다만,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기업으로 하여금 특정업종을 정부 명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이양토록 할 때 “손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안 제9조)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에 따른 보상의 일반 원칙, 즉 신속·적절·효과적 보상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해당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우리 국내기업이나를 불문하고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한·미 FTA 규정 유무를 떠나 먼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 규정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임.

## (2)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 안정성 확보 주장

**(요구)** 급식조달 예외에 지자체와 교육청의 비용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급식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협정문을 수정해야 함.

- 한·미 FTA에는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시 우리 농산물의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학교급식 분야를 우리 정부 조달 의무의 예외사항으로 명백히 규정하였음. ☞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함.

※ 부속서 17-A, Section E, Schedules of Korea 일반주석 1 :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procurement in furtherance of human feeding program.”(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한·미 FTA 정부조달 규정상의 의무는 양허표에 기재된 기관 즉, 정부조달 양허기관의 조달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정부조달 관련 의무 면제를 위해 양허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교육청 등)을 굳이 양허기관으로 기재하고 이를 다시 정부조달의 예외로 하는 특칙 규정을 넣을 이유와 실익이 없음.
- 만약, 반대측이 요구하는 대로 양허기관이 아닌 교육청을 양허기관으로 추가 기재하는 경우, 학교급식 관련 예외는 인정(종전과 동일)될지라도, 종전과 달리 교육청은 여타 분야 조달행위에 대한 의무적용을 수용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나, 그럴 필요가 없음.

**(주장 1)** 교육청은 GATT 제3조제8항에서의 “정부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의 학교급식은 정부조달 행위가 아니며,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 다대

- 1994년도 GATT협정은 동 협정 제3조제8항가호의 ‘정부기관(governmental agencies)’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시·도 교육청을 '교육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동 법 제34조), 동 기관의 예산이 지방의회에 의해 의결·확정되며, 국가의 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세수 등이 동 예산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교육청은 GATT 제3조제8항가호의 '정부기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청의 학교급식은 정부조달이므로 내국민 대우 원칙의 예외가 적용됨.

**(주장 2)** 교육청이 GATT의 정부기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현행 서울, 경기 교육청의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은 직접 구매가 아니고 급식비 지원방식임.

-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우리 농산물 구매를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GATT 3조 8항은 국내산을 구매하는 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음.

- 동 주장은 관련 대법원 판례의 정확한 의미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동 대법원 판례는 국내법 체계 내로 수용된 WTO 협정과 국내 지방자치단체 조례간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해서 다루고 있을 뿐이며,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의무 위반여부에 관해 우리 대법원이 판정을 한 것이 아님.
- 정부가 자신의 목적(학교급식용)으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직접 구매하는지 또는 급식비를 지원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조달로 볼 수 있음.
  - WTO 차원에서 학교급식용 식재료 구매는 그 정책적 필요성으로 인해 정부조달의 예외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WTO 정부조달 협정(GPA) 회원국 중 미국, EU, 캐나다 등 31개국은 GPA상 무차별대우의무가 학교급식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도록 자국 양허표에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주장 3)** : 실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는 주체는 학교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협정 제21.5조상의 민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은 한·미 FTA 제21.5조 위반임.

-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정부조달로 간주됨.
  - 1994년도 WTO 정부조달협정(GPA)에서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 실시하는 민간의 구매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조달협정상 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1994년도 WTO GPA 제1조제3항), 이 경우, 민간인 행위와 관련된 한·미 FTA에서의 의무(제21.5조)는 적용되지 않음.
- 참고로, 미국에서는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관계없이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급식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학교는 미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정부조달 행위로서 WTO GPA상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고 있음.

### (3) 개성공단 역외가공 조항 도입 주장

**(요구)** 한·미 FTA에서도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페루 FTA와 같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이 필요함.

-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원산지 특례 문제는 한·미 FTA에 규정된 대로 협정 발효 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 한·미 FTA 부속서 22-나는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한반도내 역외가공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문제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음.
  - 향후 북한 핵문제 진전 및 남북/북미관계 개선 등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면,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 문제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이에 따른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 및 미 의회 일각에서의 반대론 등을 감안하면, 재협상을 통한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조항의 반영 시도는 현실성이 없음.
  - 미 의회 일각에서는 현재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가능성을 열어둔 현행 협정문 규정에 대해서조차 반대하고 있는 사정임.
- 2011.4월 백악관이 발표한 대북한 제재 관련 행정명령은 미국이 북한 물자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해 오던 기존 조치를 행정명령 형태로 재확인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님.
  - 따라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출과 FTA 혜택여부는 협정상의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양국내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될 것임.



- 미국이 요르단과 이집트의 공업지역에 적용하였던 QIZ 프로그램은 FTA 협정상의 원산지 특례가 아니라, 미-이스라엘 FTA(1985)가 체결된 지 11년 후인 1996년에 미·이스라엘 FTA 이행법의 관세특례 범위를 요르단 내 QIZ 지역 및 기타지역(Gaza 지구, West Bank)으로 확장시킨 형식임.

#### (4)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주장

(요구)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삭제(혹은 협정문 제18.9조제5항을 의무조항 (shall)에서 임의조항(may)으로 변경)하고, 입법예고 완료한 약사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는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2010년 추가협상을 통해 3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한 만큼, 비현실적인 폐지 주장보다는 향후 3년의 준비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함.**
  - 복제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업자의 이해를 절충한 제도로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경우, 특허 보호와 복제약의 조기 활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 정부는 국내 특허 신약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업계의 신약개발역량 강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
    - \* 2007년 마련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반안(08년부터 10년간 1조원 지원)」을 시행중이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법」을 제정(2011.3.4 국회통과, 2011.3.30 공포)하여 시행 예정(2012.3.31)
  - 아울러, 정부는 유예기간동안 다양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약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한편, 제네릭 의약품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주장 1) :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특허를 가진 미국 제약회사가 허가 절차에 이의제기만 해도 최대 1년간 시판허가가 지연됨.

-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하여 제네릭의 시판이 지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현행 제도하에서도 제네릭 업체는 추후 거액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판허가 취득 이전에 특허권자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특허권자의 “이의제기”만 있으면 허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내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하는 정식 소송이 제기되어야만 시판허가 절차가 중단됨.
- 미국의 제도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1심 결정(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9개월)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제네릭 약품 시판 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음.

**(주장 2) :**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전 국민이 부담하게 됨.

-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으로 환자나 건강보험 공단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제네릭 의약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그 중 특허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일부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 신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 미국에서도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1984~2002)의 통계를 보면 (2002년 미국 FTC 보고서), 시판허가를 신청한 제네릭 의약품 중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는 평균적으로 총 100건의 시판허가신청 중 6건에 불과(6%)함. 그 6건 중 1-2건(73%)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결국,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권 침해로 시판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100건의 제네릭 시판허가 신청 중 1-2건(1-2%)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
-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소송의 경우, 제네릭의 승소율(특허권자 패소율)이 80%에 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제 제네릭 업체가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이며, 전체 의약품 특허의 80%가 무효라는 뜻이 아님.
  -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위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 실제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여 제네릭 업체가 시판허가신청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극히 드뭄.

-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제도하에서 특허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제네릭 업체가 적극적으로 특허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대책을 강구중임.
- 미국도 첫 제네릭 시판허가 신청자가 시판허가를 받는 경우, 180일간의 시장 독점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제네릭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주장 3) :** 유럽연합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금지하고 있음.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이외의 이유로 의약품 허가 거절이 불가능함.

- 그럼에도, 한·미 FTA 발효로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약품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FTA에서 허가·특허 연계를 포함하지 않은 EU는 물론 모든 국가의 특허 의약품에 적용됨.

- EU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자료보호기간을 신약 출시 후 10년으로 규정(우리는 시판허가일로부터 6년)하여 허가·특허 연계제도보다 더 강력하게 의약품 지재권을 보호하고 있음.
-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실험 자료를 원용하여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제도인 반면, EU의 자료보호는 그러한 자료의 원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허가·특허연계제도보다 더 엄격하게 의약품 지재권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특허제도 및 WTO 협정상 특허권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할 수 없음.
- 우리 특허법상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이 필요하며(한국에 특허권이 없는 EU 제약사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활용 불가), 등록된 특허권자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됨.
- 또한,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도 내국민 대

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특허권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조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 TRIPS 협정에는 지역무역협정 관련 MFN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해 동일한 대우가 필요

**(주장 4) :** 미국은 2007년 이후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 맺은 FTA에서도 허가·특허 연계제도 조항 자체를 삭제하였음.

- 미국이 2007.6월 이후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조항을 재협상한 결과,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폐지한 것이 아님.
- 대신, 의약품 특허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shall⇒may), 동 제도가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파나마, 페루 및 콜롬비아는 개도국으로서, 지적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인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 미-페루/파나마/콜롬비아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규정의 내용

- 상세의무 내용 : 당사국은 의약품 관련 특허의 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shall), ② 특허기간중 제3자에 의한 시판허가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shall), ③ 특허권자가 시판허가 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shall).
- 이행방법 : 다만, 의무사항의 이행에 있어, ① 시판허가를 요청하는 제3자의 신원을 통보하고, ② 시판허가 절차 내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는 제3자의 특허 대상 의약품 시판을 방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may).

※ 한·미 FTA는 “상세의무” 규정이 없는 대신, “이행방법” 규정이 shall로 되어 있는 점이 미·페루/파나마/콜롬비아 FTA와의 차이점임.

## (5)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주장

(요구) 사실상 외환시장을 개방한 우리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금융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은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지켜야 할 의무로서, 한·미 FTA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음.
  -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당연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의 상황 대처를 위해 G-20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 건전성 정책을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음.
- 국내 금융시장은 1996년 OECD 가입,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부분 개방되었고, 그에 따라 관련 국내법도 이미 정비되어 있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한·미 FTA 협정의 추가 개방은 제한적임.
- 외국 자본 유출입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국내적으로 많은 대책이 강구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경험을 한·미 FTA 협상시 다각도로 반영하였음.
  - 그 결과, 우리 법령에 기초한 금융 세이프가드 조치 포함을 관철시켰고, 협정문상 다양한 유보조항과 건전성 예외조항을 포함하여 충분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였음.

(주장 1) : 한·미 FTA 금융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므로, 세이프가드조치 권한 자체를 무력화할 위험성이 존재함.

- 특히, ① 자산몰수 금지, ② 투자자 시장수익 향유능력 보존, ③ 미국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 금지 의무 등이 문제임.

- 한·미 FTA(부속서11-사(송금))에 나열된 조건들은 관련 국내외 법규상의 의무를 반영한 것으로, 한·미 FTA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님.

- 동 요건들은 우리 외국환거래법 및 국제통화기금(IMF), GATS 협정문상의 의무와 사실상 동일하며, 세이프가드 조치 채택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님(반면, 미국은 금융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불가).
- **(몰수 금지 문제)** 금융 세이프가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해외송금을 제한하는 것이지,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며, 외국환거래법에서도 몰수는 조치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장수익률 획득 능력 문제)** 동 요건은 자본 유출을 통제할 경우에도 외국투자자본의 국내적 운영은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시장수익률 획득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님.
- **(불필요한 손해 문제)** “미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 또한 GATS 제12조 상 요건을 그대로 기술한 것임.
  - 어떠한 무역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조치의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해당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원칙은 WTO 회원국이 지켜야 할 GATT, TBT, SPS, GATS 협정 등 국제적인 무역 규범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요건임.

**(주장 2) :** 금융 세이프가드조치 결과로 투자자에 재산박탈에 상응하는 영업손실 발생시, 간접수용으로 우리 정부를 ISD에 제소 가능함.

- 간접 수용 배제사유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은 명시되어 있으나, 금융 세이프가드는 미포함됨.

□ 부속서11-사(송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이프가드는 한·미 FTA 의무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ISD 제소 대상도 아님.

**(주장 3)** :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서 금융자유화의 한계가 입증되었으며, 한·미 FTA는 G20 등 최근의 금융규제동향을 반영하지 못함.

- 우리나라는 금융건전성규제를 위한 국제적 논의 및 국제금융공조에 활발히 참여했을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2009.6월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G20에서 논의되었던 거시건전성규제조치(예: “거시건전성부담금”(일종의 은행세)을 2011.8월부터 도입·시행)를 이미 도입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들은 제13.10조제1항 상의 건전성 예외로, 한·미 FTA상 의무에 저촉되지 않으며,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유지·도입·강화가 가능함.
-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부터 국내적으로 많은 대책을 강구해 왔고, 한·미 FTA 협상시에도 금융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확보하였던 것임.
- 한·미 FTA에 포함시킨 금융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 법령에 기초한 것이고, 협정문상 다양한 유보조항 및 건전성 예외조항과 함께 충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금융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송금을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경상거래뿐만 아니라 자본거래에 대한 금융 세이프가드 조치조차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음.



**별첨**

**한·미 FTA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한·미 FTA 요건	관련 규정 사례
○ 1년 이내 발동가능	○ <b>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3항</b>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	○ <b>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 1호</b> “지급 또는 수령, 거래에 대한 일시 정지” ○ <b>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 2호</b>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보관·예치 또는 매각”
○ 이중 또는 다중의 환율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	○ <b>IMF 협정문 제8조제3항상 의무</b> “차별적 통화협약이나 다원적 통화관행에 참여해서는 안 됨”
○ 우리나라에서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 됨	○ 세이프가드는 외화 유출만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지, 국내적 운영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b>기본적인 원칙</b>
○ 상업적·경제적·금융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 <b>GATS 제12조제2항(c)</b> ○ <b>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b>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체결한 <b>한-인도, 한-EU FTA 협정</b> 에도 포함
○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	○ <b>GATS 제12조제2항(e)</b> ○ <b>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3항</b> “그 조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기체결한 <b>한-EU FTA 협정</b> 에도 포함
○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 <b>GATS 제12조제2항(a)</b> “회원국 간에 차별되지 아니함” ○ 기체결한 <b>한-싱가포르, 한-인도 FTA</b> 에도 포함
○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의 공표 의무	○ <b>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b>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6)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주장

(요구) 자동차 세이프가드 제도의 발동요건을 엄격화해 미국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함.

### □ 자동차 세이프가드 기간 단축이나 여타 요건 변경을 위한 재재협상은 불필요함.

(주장 1) : FTA 체결이유 중의 하나는 관세철폐를 통해 수출증대 효과를 거두려는 것인데, 세이프가드의 과도한 허용은 FTA의 목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 또한 특별 세이프가드로 인해 국내 투자 보다는 현지 생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매우 커짐.

□ 2010.12월 추가 협상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한·미 FTA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우리나라가 미측에만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 아니라 상호 적용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불리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음.

□ 자동차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은 원 협정상의 일반 세이프가드 발동요건과 동일하므로 추가 협상으로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은 아님.

○ 즉, 한·미 FTA 자동차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위해서는 원 협정상의 세이프가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수입급증으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야 하므로 실제 발동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자동차의 미국내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직접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추세이므로, 수입 급증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음.

※ 우리 자동차의 현지 생산 증가 추세  
: 250,519대(2007) → 237,042대(2008) → 210,566대(2009) → 454,165대(2010)

○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사례도 전무함.

□ 반면, 작년 대미 직접 수출액이 41억불 기록하면서 대미 수출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세이프가드 대상이 아님.

※ 대미자동차부품 수출 (괄호는 자동차분야 수출액중 자동차부품 비중)  
: 25.9억불(22.8%) (2006) → 27.0억불(26.8%) (2008) → 41.2억불(37.9억불) (2010)

○ 자동차 부품은 협정 발효시 미국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므로, 관세감축의 혜택은 누리면서 동시에 세이프가드 걱정은 없다는 의미임.

**(주장 2) : WTO 협정은 “어떠한 형태의 세이프가드 조치”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다자 세이프가드 ▲농산물 세이프가드 ▲WTO가입 의정서상 규정된 세이프가드 ▲관세철폐가 진행중인 기간동안만 적용되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허용하고 있는데, 한미 FTA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양자 세이프가드에 해당은 되나 관세철폐 기간을 넘어 적용되기 때문에 WTO 규범에 위배됨.**

□ 우선, WTO 협정이 “어떠한 형태의 세이프가드 조치”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WTO 협정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허용하는 체제가 아님.

○ 오히려, 세이프가드 조치를 다자무역체제 유지에 필요한 무역구제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세이프가드 협정을 통해 그 발동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체제임.

□ 더욱이, WTO 협정은 FTA하의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FTA하 양자 세이프가드의 조치가능기간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관세철폐기간을 넘어서 적용된다고 하여 WTO 규범에 위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FTA하의 양자 세이프가드의 조치가능기간이 관세철폐기간을 넘어서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기체결한 FTA에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다만, 구체적인 조치가능 기간은 협상결과에 따라 상이하며, 관세철폐 기간과 같을 수도 있고 길수도 있음).
  - 한미 FTA 원 협정하의 세이프가드에서도 조치가능기간을 기본적으로 “발효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상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보다 짧은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가능 기간이 동 관세 철폐기간보다 길게 되는데, 이것을 당연 WTO 협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가능기간은 “관세철폐 기간 완료 후 10년”인데, 한·미 FTA 원 협정에서 규정한 “발효 후 10년”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 자동차에 대하여는 원 협정상 여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능기간은 발효 후 “10년”이었음.
  - 한편, 추가 협상에 따라 중·소형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이 4년간 유예 되었으므로 조치가능 기간은 “협정 발효 후 4년 + 10년”이 될 것이나, 협정 발효 후 4년간은 관세철폐가 되지 않아 동 기간중에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추가 협상 이후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능 기간은 “10년”으로서 기간에 있어 당초 합의와 차이가 없음.

## (7)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주장

**(요구)** ① ISD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투자 챗터상의 의무를 어느 한 당사국이 위반한 경우에는 당사국간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거나, ② 당사국의 ISD 동의 절차 규정을 무조건 동의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수정해야함.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는 외국인 투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며, 우리의 정당한 공공정책 추진과는 무관하므로 재재협상을 통한 삭제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

○ ISD는 한·미 FTA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체결·발효한 85개 투자협정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2,500여개에 달하는 투자 관련 국제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임.

○ ISD는 외국인 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외국 투자자의 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유용함. 특히, 우리의 해외투자가 외국인 투자유치보다 크며, 미국내 우리 기업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미국내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임.

※ 2006년~2010년간 한국의 대미투자(203억불) > 미국의 대한투자(88억불)

○ 또한, 당사국이 아닌 제3의 재판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 대 국가간 분쟁이 가져오는 정치·외교적 파급 및 비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도 있음.

**(주장 1)** : ISD는 투자유치국의 조치를 투자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므로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일각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된 모든 조치(공공정책 포함)가 ISD 제소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한·미 FTA 협정상 ISD 제소 요건은 매우 제한적임.

- ISD 제기를 위해서는 투자유치국이 투자챗터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 송금, 이행요건 등)를 위반하거나,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발동 요건도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제11.16조).
- 아울러, 부속서I(현재유보)과 부속서II(미래유보)에 기재된 협정상 의무와 비합치되는 조치들은 협정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ISD 대상이 되지 않음.
  - 우리 국내법규상 보건, 환경, 미풍양속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을 한·미 FTA 협정문에 개별적인 유보(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유보 등)로 처리하여 이들 분야에서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또한, 서비스챗터는 아예 ISD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금융챗터의 경우에는 ISD 의무 위반 여부가 판단되는 조항을 제11.6조(수용 및 보상), 제11.7조(송금), 제11.11조(혜택의 부인), 제11.13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로 제한하고 있음(제13.1조제2항나호).

□ ISD로 우리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ISD 제소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정부의 공공정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FTA로 인하여 정당한 정책조치가 제한받지 않도록 공공정책 재량권을 확보하고 있음.
- ① (간접수용 예외)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음(부속서11-나 제3항나목).

※ 우리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는 공급확대목적정책(신도시계획, 공공택지지정,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광역재정비사업 등), 투기억제정책(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금융정책(주택담보대출 등)이 모두 해당됨.

- ② (공공질서 유보)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상의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권을 반영하였음. 동 유보는 미국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적용됨.
  - ③ (조세)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과 원칙에 부합된 과세조치와 비차별적 과세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음(부속서11-바).
  - ④ (단기 세이프가드) 부속서11-사(송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미 FTA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ISD 제소 대상이 아님.
- 더구나, 공공정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ISD 제소 가능성이 거의 없음.

**(주장 2) :** 한·미 FTA의 자동동의조항으로 인해 국가는 ISD 회부에 동의하지 않을 재량권이 없음.

- 한·미 FTA 제11.17조의 중재 동의 규정은 투자협정체결의 핵심적 규정으로서 중재관할에 대한 피청구국의 사전적·일반적 동의를 명확히 하고 투자유치국의 중재판정에 대한 임의적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 FTA의 투자협정이나 투자보장협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규정임.
-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2007년 개정협상에서 우리측 요구가 반영되어 사전 동의 규정이 삽입되었으며, 한·ASEAN FTA, 한·인도 CEPA에서도 동 사항이 삽입되어 있음.
- 현재의 동의조항을 당사국 재량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중재절차가 시작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ISD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것임.

**(주장 3) :** BIT에 비해 FTA는 ISD 중재판정의 불이행시 특혜관세 중단 등 무역보복조치를 당할 수 있어 그 영향력이 큼

- 중재판정 불이행이 곧바로 무역보복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임.
- 중재판정이 불이행되는 경우에 한·미 FTA하에서는 투자자의 국적국이 FTA상의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동 중재판정 불이행이 FTA

협정 위반이라는 패널 판정을 받아내야 하며, 이러한 패널의 판정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무역보복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무역보복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임.

**(주장 4) : 간접수용을 이유로 한 ISD 제소 가능성이 높음.**

- 한·미 FTA는 간접수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정부 제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임.
- 우리는 수용부속서에서 간접수용의 판단법리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중보건·환경 등과 공공복지 정책은 간접수용의 예외로 명시하여 간접수용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
  - ※ 간접수용: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equivalent) 효과를 가지는 경우”로 정의(수용부속서)
  - ① 간접수용의 판단법리로 (i) 경제적 효과, (ii) 정부 조치의 성격, (iii) 합리적 기대이익 침해 여부를 고려하되, 우리 법제상 ‘특별희생 (special sacrifice)’ 법리를 추가
  - ② (i) 공중보건, (ii) 안전, (iii) 환경 및 (iv)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 실제 간접수용에 해당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됨.
- NAFTA(1994)의 ISD 사례 중 간접수용으로 판정된 사례는 Metalclad v. Mexico 사건 한 건밖에 없으며, 이는 정당한 허가발급이 거부되어 투자가치가 전면적으로 영구히 박탈된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임.

**(주장 5) : ISD는 사법권을 침해함. 한국의 검찰과 대법원의 판결도 국제 중재에 회부될 수 있음.**

- ISD가 우리의 사법제도를 부정한다는 주장은 국제분쟁해결의 본질을 오해한 과장된 것임.



- ISD와 같이 조약당사국의 협정 의무 준수 여부를 당사국의 법원이 아닌 제3의 판정기구에서 심판하는 분쟁해결제도는 투자협정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 여타 조약에서도 채택되고 있는 제도임.
  - 이러한 분쟁해결방식을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약당사국이 분쟁당사자일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제3의 판정부를 통한 중립적·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를 오해한 것임.
  -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가 대 국가간 분쟁이라는 점에서 ISD와 상이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 정부의 행위에 대한 국제적 사법기구의 심사라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함.
- 검찰의 사법권 행사나 대법원과 현재의 판결도 제소대상이 된다는 주장 관련, 투자협정의 적용 대상은 계약당사국(a Party)의 '조치(measure)'이므로 광의의 당사국 정부를 구성하는 사법부의 행위도 협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임.
- 실제로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판정을 심리하게 되는 경우는 국내 사법절차에 있어서 외국인의 적법절차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인, 정당한 변론권의 박탈 등 재판 절차를 명백히 부당하게 진행)하여 협정상 의무(최소기준대우 등)를 위반하였는지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 따라서 마치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판정을 재심하게 되어 사법주권이 침해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겠음.

## (8) 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 전환 주장

(요구) 서비스 분야의 negative list 방식을 posi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서비스 분야의 개방 방식 보다는 개방의 범위와 수준이 중요하며, 한·미 FTA의 네거티브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개방 내용이나 수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님. 또한, 한·미 FTA는 공적 규제권한을 모두 확보하였고, 우리가 공공정책 목적상 규제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모두 유보하였음.

(주장 1) : 정부의 공적규제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positive list 방식이 더 유리함.

- 네거티브/포지티브 방식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 범위를 기재하는 방식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개방의 범위와 수준은 특정 방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 공적규제권한 확보를 위해 포지티브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임.
- 한·미 FTA에서는 공적 규제권한을 모두 확보하였음.
  - 공익성이 높은 분야와 향후 정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를 선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였음(미래유보를 통해 총 44개 분야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 구체적으로, ①사회 서비스(공공 서비스), 보건-의료, ②공기업 민영화, ③취약 집단에 대한 대우, ④운송(도로, 철도, 내륙주운), ⑤에너지(원자력, 전력, 가스), ⑥방송 등 시청각분야, ⑦환경 분야 등에 대한 권한 유보

(주장 2) : 4개의 동 아시아 FTA(한·싱가포르, 니카라과·대만, 싱가포르·파나마, 싱가포르·미국 FTA)에서 공적 규제가 특히 중요한 금융 서비스 분야는 negative 방식을 positive 방식으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전환하였음.

- 동아시아 지역 FTA상의 금융 분야가 모두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전환되어 한미 FTA와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반대측에서 언급한 4개 FTA 중 3개 FTA(니카라과·대만, 싱가포르·파나마, 싱가포르·미국 FTA)는 금융분야에서 모두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국경간 무역(cross-border trade)에서만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반대측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참고로, 반대측에서 언급한 4개 FTA의 일반 서비스/투자 분야의 유보안은 모두 네거티브 방식으로 작성되었음.

**(주장 3)** : 서비스시장 분야는 개방 방식에 따라 개방과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음. 즉, negative list 방식은 미래 서비스를 전면 개방하는 반면, positive 방식은 그 반대임

-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있어, 개방방식 보다 개방하고자 하는 범위와 수준이 더 중요함.
  - 일례로, 네거티브 방식을 택한 한·미 FTA와 포지티브 방식을 취한 한·EU FTA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사실상 동일함.
- 다만, 여기서 “개방”이라는 의미는 국내기업과 차별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약속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 환경, 토지, 노동 등 제반 국내법령에 따른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주장 4)** : 정부는 공익성이 높은 분야와 향후 정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를 개방대상에서 포괄 유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

- 정부가 포괄유보 했다는 미래유보를 살펴보면 국경간 서비스에 적용되는 6개 이상의 의무 중 일부는 유보되어 있지 않음.
- 공적 규제가 필요한 분야로 최근에 대두된 분야, 예컨대, 건설기계(굴삭기) 수급 조절, 유통서비스 분야(도매, 소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의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보가 없음.

- 우리 부속서 II(미래 유보)에는 우리가 공공정책 목적상 규제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모두 유보한 것임.
  - 미래유보를 작성할 당시 도입이 예상되는 규제내용을 감안하여 해당 의무를 유보하는 것이므로, 협정상 모든 의무를 유보할 필요는 없음.
  - 예를 들어, 내·외국기업 차별에 대한 규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내국민대우 의무(NT)를 유보할 경우, 반드시 이행요건(PR)이나 현지주재(LP) 등의 기타 의무까지도 유보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건설기계 수급조절, 유통 서비스(도매, 소매),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관한 양허는 16년 전 발효된 WTO 서비스 협정(GATS, 1995.1.1 발효)의 우리 양허표와 여타 FTA에서의 우리 개방수준에 기초하고 있음.
  - 이러한 분야에 대한 규제는 한·미 FTA 이전에 WTO 규범 등 여타 협정과 불합치 문제가 먼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한·미 FTA에만 한정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음.
  - 건설기계 관련 종사자나 중소기업인 보호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맺은 국제협정에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앞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임.

## (9)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주장

(요구) ratchet 조항은 한국경제의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함.

- 역진불가 조항은 경쟁력 강화, 예측 가능성 증대 등을 위한 서비스 시장 개방의 유효한 정책 수단이며, 우리의 공공 서비스를 포함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정에서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하였기 때문에 주권 침해 및 폐기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

(주장 1) : 협정상 개방수준을 약속한 것이 아닌데, 국내규제 수준 완화시 원상회복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는 것임.

- 자유화 후퇴방지 조항(역진불가 조항 또는 ratchet 조항)이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침소봉대하는 것임.
  - 역진불가 조항은 적용대상이 모든 분야가 아니라, 서비스·투자 분야의 '현재유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적용범위가 한정적임.
  - 동 조항은 시장개방 및 투자자·무역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증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FTA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우리 서비스 발전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
    -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등에서 이미 포함되었던 제도임.
  - 한미 FTA에서는 공공 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정에서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미래유보하였으므로 역진불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규제는 언제든지 가능함.

※ 방송 등 시청각분야, 전기·가스·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교육(성인교육 및 고등 교육 일부 제외)·보건·사회서비스 등 44개 분야에 대한 미래유보를 유지

**(주장 2) :** 우리 유보에는 영리 대학 설립 금지를 현재유보 목록(부속서 I)에 적시하면서, 미래유보(부속서 II)에서는 제외하였으므로 만일 일반 영리 대학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없음.

-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 허용은 우리나라 사립학교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교육은 시장논리 외에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만약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임.
- 현 단계에서 도입 가능성이 낮은 영리대학을 역진불가 조항의 폐해로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
  - ※ 한·미 FTA상 현재유보에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비영리 학교법인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미래유보에는 그 외 교육기관(유아·초등·중고등학교, 교대, 법학전문대학원, 의대 등)에 대해 유보

**(주장 3) :** 스크린쿼터, 한약수급조절제도, 종편방송, 옥외광고 관련 자유화수준 후퇴도 불가함.

- 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역진불가 조항을 도입하였으므로, 예시된 분야에서의 우리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는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동 분야는 우리 정부가 점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자유화 수준을 높여온 분야로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방에 따른 체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점진적 자유화를 통한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정책과도 부합

**(주장 4) :** 상수도사업이 현행의 국가, 지자체, 한국 수자원공사의 공영제가 아니라 민영화되어 사적 공급이 허용될 경우, 한·미 FTA에 의해 자유화수준 후퇴가 불가함.

- 한·미 FTA에서는 물 서비스를 포함하여 공공서비스 관련 정부의 규제권한을 미래유보(예: 상수도사업의 민영화시 정부의 지분처분 재량권 유보)하였으므로 역진불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상수도 사업은 국민 기초생활에 영향을 주는 공공성이 큰 분야로서 전국단위의 민영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봄.
- 설령 상수도 사업이 만약 민영화된다하여도 정부는 물 산업 관련 제반 규제권한을 확보할 것인바, 민영화시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자 요건 등 다양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음.

## (10) 농·축산업 주요품목(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주장

**(요구)** 2010년말 재재협상 당시 미측에 자동차 관세를 유예한 것과 같이 우리 쇠고기에 대해 10년간 관세인하 유예가 필요함.

- 쇠고기에 대한 재재협상 요구시 사실상 상품분야의 전반적인 재협상으로의 확산이 불가피함. 재협상의 실질적 이득도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고려, 수용할 수 없는 주장임.

**(주장 1)** : 미국산 쇠고기 수입증가는 한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시장까지 잠식할 우려가 있음.

- 쇠고기 수입증가가 국내 돼지고기나 닭고기 시장까지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는 실증적 근거가 없음.
  - 최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국내 소비량은 나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음.

※ 돼지고기 및 닭고기 국내 총소비량 추이

- 돼지고기 : 834천톤(03) → 838천톤(05) → 931천톤(07) → 916천톤(09)
- 닭고기 : 375천톤(03) → 357천톤(05) → 434천톤(07) → 469천톤(09)

**(주장 2)** : 현재 15년+농업세이프가드로 합의된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하여 15년차에 40%관세를 모두 철폐해야 함.

- 반대측에서 요구하듯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인하를 10년간 유예하고 이후 5년간 8%씩 관세를 감축하는 것이 15년간 매년 2.7%씩 감축하는 현행 양허안보다 국내 한우 농가에 충격이 덜 갈 것이라는 전제는 근거가 없음.
  - 10년간의 관세인하 유예기간 만료 후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 급락을 초래하여 국내 축산업계의 차분한 구조조정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15년간 균등하게 소폭으로 관세를 감축해 나가는 현 협정 규정이 미국산 쇠고기 가격 인하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에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한우와 수입 쇠고기 가격차를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 관세 양허 일정을 재조정하더라도 반사이익은 호주산 등 여타 수입 쇠고기에 돌아갈 것임.
- 한우는 고가·고품질로 인식되어 수입 쇠고기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산 쇠고기 등 여타 수입 쇠고기와 더 깊은 경쟁관계에 있음.
  - ※ 최근 국내 쇠고기 수입시장 점유율
    - 2010년 : (1위) 호주 49.7%, (2위) 미국 37.0%, (3위) 뉴질랜드 12.6%
- 또한, 현재 국내 쇠고기 총 소비량 약 43만톤(2010년) 중 약 56%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반대측 주장 : “한·미 FTA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협정이다.”

☞ 미국 한·미 FTA 이행법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평등 협정이라고 주장

□ (미국 연방법·주법이 한·미 FTA보다 우선한다는 오해) 국제협정을 국내법 체제에 수용하는 방법상의 차이일 뿐, 국제협정상 의무는 양국에 동일

-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제6조제1항)에 따라 FTA와 같은 조약은 국내법 체제에 그대로 수용되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
- 미국의 경우, 한·미 FTA는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는 방식(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론적 체계)

※ 한·미 FTA뿐 아니라 WTO 협정을 포함, NAFTA 등 미국이 그간 체결한 여타 FTA 이행법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음.

□ (우리 투자자는 한·미 FTA를 근거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오해) 우리 투자자는 한·미 FTA 내용이 반영된 미측 이행법과 미국법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 얼마든지 소 제기가 가능

□ (반덤핑, 개성공단, 전문직 비자쿼터 등 우리 핵심이익이 미측 이행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오해) 반덤핑과 개성공단에 대한 협정내용은 미국 행정조치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전문직 비자쿼터는 한·미 FTA와는 무관하고 협정 발효후 별도로 지속 추진 계획

- 한·미 FTA에는 미국내 이민정책의 민감성으로 인해 우리 협상단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 미국은 2008.11월부터 우리 국민의 상용·관광 목적 90일 이내 체류에 대한 비자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 또한, 2010.12월 추가협상시 우리 대미진출 기업의 현지주재원에 대한 비자(L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 (1년 또는 3년 → 5년)

## (1) 한·미 FTA와 미 연방법·주법과의 관계

### ㉠ 한·미 FTA와 미 연방법과의 관계

- 한·미 FTA 규정이 미 연방법과 불일치할 경우, 한·미 FTA의 관련 규정과 동 규정의 적용은 효력이 없다 라는 취지의 규정(이행법안 102(a))은 한·미 FTA 협정과 미국 국내법간의 법적인 우열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님.
- 우리와 달리, 미국은 한·미 FTA가 그 자체로는 미국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지 않고 FTA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는 방식(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론적 체계)을 취함.
  - 따라서, 미국의 경우,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은 동 이행법안을 통하여 빠짐없이 모두 개정하며, 추후 이행과정에서 한·미 FTA의 특정 조항이 미 국내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한·미 FTA의 해당 조항이 국내법 규정을 대체하여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 정부가 해당 미 국내법을 개정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됨.
  - 미측의 한·미 FTA 이행법은 바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이는 한·미 FTA 이행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한·미 FTA뿐 아니라 WTO 협정을 포함, NAFTA 등 미국이 그간 체결한 여타 FTA 이행법안에도 동일하게 규정).

※ (SAA 관련 문구)

Section 102(a) clarifies that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will be given effect under domestic law if it is inconsistent with federal law, including provisions of federal law enacted or amended by the bill. Section 102(a) will not prevent implementation of federal statutes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where permissible under the terms of such statutes. Rather, the section reflects the Congressional view that necessary changes in federal statutes should be specifically enacted rather than provided for in a blanket preemption of federal statutes by the Agreement.

The Administration has made every effort to include all laws in the implementing bill and to identify all administrative actions in this Statement that must be changed in order to conform with the new U.S.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Agreement. Those include both regulations resulting from statutory changes in the bill itself and changes in laws, regulations, rules, and orders that can be implemented without a change in the underlying U.S. statute.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the President's continuing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o carry out U.S. law and agreements. As experience under the Agreement is gained over time, other or different administrative actions may be taken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to implement the Agreement. If additional action is called for, the Administration will seek legislation from Congress or, if a change in regulation is required, follow normal agency procedures for amending regulations.

102(a)조는, 한·미 FTA 이행법에 의해 제정되거나 변경된 연방법의 조항을 포함하여, 미 연방법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한·미 FTA 협정문의 어떠한 조항도 미 국내법하에서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102(a)조는 연방법의 조건에 따라 허용가능한 경우 한·미 FTA와 합치하도록 연방법을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 조항은 연방법을 한·미 FTA에 따라 포괄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연방법상 필요한 변경은 특정하여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시각을 반영한다.

미 행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미국의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모든 법을 이행법에 포함하고 또한 모든 행정조치를 본 행정조치계획에서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 이에는 이행법 자체에서의 법률 변경에서 비롯되는 규정과 더불어 근간이 되는 미국법의 변경을 하지 않고도 이행될 수 있는 법, 규정, 규칙, 명령 등의 변경을 모두 포함한다.

이는 대통령이 미국 법과 협정을 준수할 지속적인 권한과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시간이 경과하여 협정상 경험의 축적함에 따라, 다른 행정조치가 협정 이행을 위한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취하여 질 수 있다.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제정 조치를 구하거나 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위한 정상적 행정 절차를 밟을 것이다.

## ② 한·미 FTA와 주법과의 관계

- 주법이 한·미 FTA와 불일치할 경우, 미 연방정부가 해당 주법 또는 주법의 적용을 무효로 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인이나 상황에 대해 주법 또는 주법의 적용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규정(이행법안 102(b))은 주법이 한·미 FTA 보다 상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주법의 연방법 위배여부 및 무효 판단은 소송결과에 따른 최종 판단을 통해야 한다는 미 헌법상의 원칙을 재확인한 문구임.
- 주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미 FTA 이행법안은 미 연방법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 헌법(제6조제2단)상 연방법 우위의 원칙(the supreme Law of the Land)에 따라 당연히 개별 주법을 통제하는 상위의 지위에 있게 됨.
- 행정조치계획(SAA)은 한·미 FTA의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연방수준의 법과 규정과 주 및 지방의 법과 규정도 통제한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 (SAA 관련 문구)

The Agreement's rules generally cover state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hose at the federal level. There are a number of exceptions to, or limitations on, this general rule, however,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government procurement, labor, environment, investment, and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financial services.

The Agreement does not automatically "preempt" or invalidate state laws that do not conform to the Agreement's rules, even if a dispute settlement panel were to find a state measure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United States is free under the Agreement to determine how it will conform with the Agreement's rules at the federal and non-federal level, the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carrying out U.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as they apply to states, through the greatest possible degree of state-federal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한·미 FTA의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연방수준의 법과 규정과 주 및 지방의 법과 규정도 통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 상당한 예외와 제약이 있으며, 특히 정부조달, 노동, 환경, 투자, 그리고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금융서비스의 영역에서 그러하다.

한·미 FTA는 비록 분쟁해결패널이 주의 조치가 협정에 불일치한다는 판정을 할 수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주법을 사전 무력화하거나 무효시키지 않는다. 미국은 연방 또는 비연방의 수준에서 협정의 규정에 합치할 방식을 동 협정하 결정할 수 있다. 이 협정상 미국의 의무가 각 주들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미 행정부는 연방-주 간의 가능한 최대한 수준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을 약속한다.

## (2) 우리 투자자의 미국 법원 제소가 불가하다는 주장

-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취지의 규정(이행법안 102(c))은 앞서 설명한 미국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법체계상 당연한 규정임.
- 미국 국내법 체계상 한·미 FTA는 그 자체로 미국 국내법 체제에 수용되지 않고(즉, 이원론적 체계에서는 국제법 자체가 자기집행력이 없음) 한·미 FTA 협정문의 권리·의무를 반영한 한·미 FTA 이행법을 통해 미국내에 적용되므로, 미국내 우리 투자자와 같은 사인은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원용하여 미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나, 한·미 FTA 협정문을 반영한 한·미 FTA 이행법 또는 관련 미국내규정에 근거하여 미국 법원에서 제소할 수 있음. 따라서, 실제 법적 구제 효과 측면에서는 우리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음.
- 아울러, 한·미 FTA 이행법 및 행정조치계획(SAA)은 미국내 한국 투자자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는 한·미 FTA상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으며, ISD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면에서는 한·미 FTA상 미국내 우리 투자자가 한국내 미국 투자자보다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음.
- 한·미 FTA 협정문 제11.18조 및 부속서 11-마에 따라, 한국내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일단 한국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추후 ISD 청구 권리를 상실하게 되나, 미국내 우리 투자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 국내법원에 제소한 후에도 동 절차를 중단하고 ISD 청구를 할 수 있음.
- 이행법안의 동 조항은 WTO협정을 포함하여 미국이 체결한 과거 FTA 이행법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표준 문안임.

※ (SAA 관련 문구)

Section 102(c) of the implementing bill precludes any private right of action or remedy against the federal government, a state or local government, or a private party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A private party thus could not sue (or defend a suit against) the United States, a state, or a private party on grounds of consistency (or inconsistency)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 also precludes a private right of action attempting to require, preclude, or modify federal or state action on grounds such as an allegation that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exercise discretionary authority or general "public interest" authority under other provisions of law in conformity with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states, section 102(c) represents a determination by the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 that private lawsuits are not an appropriate means for ensuring state compliance with the Agreement. Suits of this nature may interfere with the Administration's conduct of trade and foreign relations and with suitable resolution of disagreements or disputes under the Agreement.

이행법안 102(c)절은 사인이 한·미 FTA 협정에 근거하여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또는 사인에 대하여 소송 또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배제한다. 그러므로 사인은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사인에 대하여 협정의 합치성 또는 불합치성을 이유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동 규정은 정부가 한·미 FTA에 합치하는 다른 법규정상의 일반 "공익적" 권한 또는 재량적 권한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방 또는 주의 조치를 요구, 배제 또는 수정하기 위한 개인의 소권을 배제한다.

주에 대하여, 102(c)절은 한·미 FTA 협정에 대한 주의 합치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은 사적 소송이 아니라는 의회와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성격의 소송은 행정부의 무역과 외교관계의 수행, 그리고 한·미 FTA 협정상의 적절한 분쟁 해결을 저촉할 수 있다.

### (3) 우리 핵심 이익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

#### ㉠ 개성공단

- 한·미 FTA에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문제에 관해 협정 발효 후 양국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이 도입된 바, 이는 협정상 합의사항으로 양국 모두를 구속함.
  - 향후 북한 핵문제 진전 및 북미관계 개선 등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동 위원회를 통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 인정 논의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은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necessary or appropriate) 법 제·개정사항만을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협정 내용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음.
  - 따라서, 양국 정부간 협의채널인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 대하여 한·미 FTA 이행법안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등 한·미 FTA의 여타 위원회도 동 법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행정조치계획(SAA)에서 언급되어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내용은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현행 대북제재가 바로 변경되지는 아니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내용에 불과함.



## ② 반덤핑

- 한·미 FTA에서 합의된 대로 기존 미국 반덤핑 관련 절차에 추가하여 절차적 개선을 도모한 부분은 미측의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집행 가능한 것이므로 미측의 이행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행정조치계획(SAA)에 아래와 같이 미국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음.
  - 행정조치계획(SAA, 제10장 관련 행정조치사항)은 “미 상무부가 협정규정 대로 홍보 및 협의 의무를 제공할 것이며, 아울러 약속(undertakings) 요청 관련 정보 제공 및 협의 기회 제공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
  - 상기 행정조치계획(SAA) 규정은 미국이 여타국가와 체결한 FTA에는 없는 것으로 한·미 FTA상의 반덤핑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이행의무를 기술한 것임.
- 한·미 FTA에 따른 사전 통지 및 협의절차를 통하여 우리는 미측의 반덤핑 절차개시 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함으로써, 반덤핑 조사 절차진행을 견제하고 이후 절차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되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됨.

## ③ 전문직 비자쿼터

- 한·미 FTA 협상시에는 미국내 이민정책의 민감성으로 인해 우리 협상단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 미국은 2008.11월부터 우리 국민의 상용·관광 목적 90일 이내 체류에 대한 비자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 2010.12월 추가협상시에는 우리 대미진출 기업의 현지주재원에 대한 비자(L 비자)의 유효기간 연장(1년 또는 3년 → 5년)에 대해서도 합의함.
- 한·미 FTA 서명 이후 정부는 우리측 인사의 미의회 의원 및 관계인사 접촉, 미의회 보좌관 방한 초청사업 계기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미국 조야에 우리의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음.

※ 2008.4.16,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Faleomavaega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전문직 비자쿼터(E-4)를 연 2만개 별도 할당하는 요지의 법안(HR5817)을 제출하였고, 동 법안은 4.28 관련 소위에 회부되었으나, 추가 논의 없이 제110대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미 행정부 및 의회를 별도로 접촉하여 전문직 비자쿼터의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

## 반대측 주장 : “농축수산/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대책 확대가 필요하다”

- (농축수산 피해대책) 2007년 마련·시행중인 종합피해대책을 재점검하여 지원규모를 1조원 확대(21.1→22.1조원)하고,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등 세부 대책내용을 내실화한 농축수산 피해대책을 8.19 발표
  - 국회 농식품위의 추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수용여부(예산·세제지원 확대 등) 검토중 (기재부·농식품부)
    - ※ 지난 10.23(일) 개최된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 회의시 정부는 축산발전기금 2조원 지원, 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가 약속
- (중소상인 보호대책) 야당은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전통시장 기금 마련 등을 요구중
  -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안” 내용은 WTO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대외적 약속과 배치
  - 중소기업은 우리의 대외무역에 중요한 기여(2010년 총수출의 33% 차지)를 해오고 있으며, 수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취업유발인원은 227만명으로 중소기업 전체 고용(309만명)의 73%를 차지 (2011.8월 무역협회 보고서)
    - ※ 지난 6.23 중소기업단체협의회(14개 단체)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
      - 한·미 FTA 발효시, 자동차부품, 섬유, 신발 등 분야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 소상공인 대부분은 시장개방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경쟁력 강화와 보호·지원간 정책적 균형이 필요 (금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예산 7,157억원)

- ISD는 반세기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 온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임.
  - 전세계 2,676개 투자협정(BIT)의 대부분에 포함
- 우리에게도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님.
  - 우리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모든 FTA(7개 중 한·EU FTA를 제외한 6개)와 85개 양자간투자협정 중 81개에 ISD가 포함 (ISD 절차인 ICSID에는 우리나라가 1967년 가입)
    - ※ EU 회원국들과는 개별 투자협정에서 ISD를 반영
  - ISD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ISD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함.
  -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외국인 투자보다 크므로, ISD 제도를 통한 우리의 해외 투자 보호가 긴요
    - ※ 우리의 대세계·대미 해외투자·투자유치 규모 (2011.6월까지 누적금액)
      - 對세계 : (한국→세계) 2,676억불, (세계→한국) 1,789억불
      - 對미국 : (한국→미국) 534억불, (미국→한국) 449억불
  - 우리 해외 투자가 집중된 중국과도 투자보장협정을 2007년 개정하여 ISD 조항을 강화
  -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미국내 경쟁국 투자는 ISD로 보호받는데 우리 투자는 ISD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곤란
    - ※ 우리 경제계(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등)는 “ISD가 중립적 분쟁 해결 수단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한·미 FTA 비준촉구 성명 발표(11.1)
- ISD는 우리의 정당한 공공정책 추진과 무관함.
  -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협정 적용배제, 예외, 유보 등의 방법으로 자율권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ISD 제소를 우려할 필요 없음. (제 1편 IV항 참조)
  -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책은 물론,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등 정당한 정책은 간접수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ISD 적용이 배제됨. (부속서 11-나 제3항 나목)

## IV 우리의 공공정책 자율권 현황

한·미 FTA 협정내용 중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 1 협정의 적용배제

- 공공퇴직제도·법정사회보장제도(제13.1조제3항가호)(330쪽)
  - 공공퇴직제도(예:국민연금) 및 법정사회보장제도(예: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중앙은행·통화당국에 의한 금융서비스(제13.1조제3항나호)(330쪽)
  - 중앙은행(한국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기획재정부 등) 및 국가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 국책금융기관(제13장 서한의 “일정 정부 기관”)(360쪽)
  - 국책금융기관(총 8개: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 정부제공 공공서비스(제12.1조제6항)(301쪽)
  -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소방, 경찰, 교정 서비스 등)
- 보조금
  - 한·미 FTA에는 보조금 규정 부재(특히, 보조금에 대하여는 투자, 서비스 관련 의무 적용배제 명시(제11.12조제5항나호, 제12.1조제4항라호)) (269쪽, 301쪽)
- 도박 및 베팅 서비스(제12장 서한)(321쪽)

1) 쪽수는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한글본 협정문 기준임.

## 2 예외

### □ 일반적 예외

-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무역원활화, SPS, TBT(제2~4, 6~9장)에 대해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가 적용됨(제23.1조제1항)(534쪽).

\*공중도덕 보호 조치,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

-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제12,14,15장)에 대해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가 적용됨(제23.1조제2항)(534쪽).

\*공중도덕 보호 조치,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

### □ 필수적 안보(제23.2조)(534~535쪽)

- 우리나라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우리나라가 판단하는” 조치는 협정 전체의 예외임.

※ 분쟁해결절차에서 우리나라가 “필수적 안보” 예외를 원용하면 ISD 중재판정부 또는 패널이 이를 그대로 인정(제23장각주2)(535쪽)

### □ 비차별적 과세조치(제23.3조)(535~537쪽)

### □ 비차별적 통화·신용·환율정책(제13.10조제2항)(335쪽)

### □ 건전성 조치(제13.10조제1항)(335쪽)

- ① 금융소비자 보호, ② 금융기관 건전성, ③ 금융제도 안전성을 위한 건전성 조치

### □ 우리 외국환거래법 제6조상의 단기세이프가드조치(부속서11-사)(297쪽)

### □ 간접수용 예외(부속서11-나)(291~292쪽)

- 공공복지(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등)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

### 3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 □ 정부조달

- **학교급식용 식재료 국내산 농산물 우선 구매**(부속서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1항)(428쪽)
-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속서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가호)(428쪽)
- **MRO(소모성 행정용품) 공급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속서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가호)(428쪽)
- **농수축산물 공공비축제도\*** 유지(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부속서17-가 제1절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석 제5항)(422쪽)  
\* 2005년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제 도입
- **민간투자사업 발주시 중소기업 참여 장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부속서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나호)(428쪽)
- **긴급상황시 국산 의약품 우선 구매 등 국민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달 관련 자율성 확보**(제17.3조제1항(정부조달협정제23조 준용))(409쪽)

#### □ 금융

- **정부지원기관**(총 5개: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에 대한 조세 면제, 채권 보증, 손실 보전 등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유지(현재유보: 부속서III 제1절 12번째 유보)(702쪽)
- **보험회사,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 유지**(부록III-가 나호 및 라호)(687쪽)
- **예금·대출 이자율, 예금 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유지**(부록III-가 카호)(688쪽)

#### □ 공공 서비스

- **정부가 독점을 지정하거나 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권한과 공공서비스 요금 승인 권한 유지**(제16.2조, 제16.3조 및 제16장각주3)(401~402쪽)
-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권한행사 서비스 민간 이양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권한 유지**(미래유보: 부속서II 2번째 유보)(618~619쪽)

## □ 외국인투자 유치

-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투자 설립·인수에 대한 제한조치 채택가능  
(미래유보: 부속서II 1번째 유보)(616~617쪽)

## □ 지적재산권

- 의약품 등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 권한 유지(제18.9조제3항)(450쪽)

## 4 **현재유보 · 미래유보**

### ※ 유보대상의무(총6개)

- 투자분야(4개): 내국민대우(제11.3조), 최혜국대우(제11.4조),  
이행요건 부과금지(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제한금지(제11.9조)
- 서비스분야(4개): 내국민대우(제12.2조), 최혜국대우(제12.3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 최소기준대우(제11.5조), 수용 및 보상(제11.6조), 송금(제11.7조) 등은 그 성격상 유보 대상이 되지 않는 기본적 의무임.

## □ 투자·서비스 분야 현재유보 47개 (☞참고1)(543~597쪽)

※ 현재유보: 협정상 유보대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

## □ 투자·서비스 분야 미래유보 44개 (☞참고2)(616~670쪽)

※ 미래유보: 향후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포괄적인 정책 자율권 확보)

## □ 금융분야 현재·미래유보 18개 (☞참고3)(684~708쪽)



## 참고 1

## 한국의 투자·서비스 분야 현재유보 47개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1	S	건설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S	건설기계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	S	자동차 정비·수리·판매·폐기·검사 및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4	S	담배·주류 도소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5	I	농축산물	NT	1) 쌀 및 보리 재배·투자 금지 2) 육우 사육에 대한 투자제한 명시(50%)
6	S	안경사	MA LP	1) 유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2) 1개 업소 설치 요건
7	S	식품·의약품(한약재포함)·기능성 식품 등의 도소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요건 명시
8	S	의약품 소매(약국)	MA LP	1) 유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2) 1개 업소 설치 요건
9	S	철도운송	MA	사업자 수 제한 요건 명시
10	S	도로 여객 운송(택시·노선 버스 제외)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1	S	해운 서비스(국제화물운송, 도선업, 선박투자회사)	NT MA LP	1) 도선업의 적용중인 NT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3) 설립형태 제한 명시(상법상 주식회사로 한정)
12	I	항공운송	NT SMBD	1)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49%) 2) 이사회 의 국적제한 명시
13	S,I	항공운송(특수항공)	NT SMBD LP	1)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49%) 2) 이사회 의 국적제한 명시 3)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14	S	도로운송 서비스(주차장, 견인 등)	MA LP	1)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15	S	쿠리어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16	S,I	통신 서비스	NT MA LP	1)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 2) KT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 3)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 명시 4)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7	S	부동산(중개-감평)	LP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18	S	의료기기 임대·정비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9	S	자동차 임대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0	S,I	해양조사 및 지도제작	NT	국적에 따른 차별적 절차 요건 명시
21	S	법률서비스	MA LP	1)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2	S	노무사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3	S	변리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4	S	회계·감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5	S	세무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6	S	통관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 S:서비스, I:투자, NT:내국인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27	S	산업보건·안전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8	S	엔지니어링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9	S,I	옥외광고물·전광판	PR SMBD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2) 회사 임원 및 프로그램 편성자의 국적 요건 3) 프로그램의 30%를 (국산) 공공 광고 편성 의무
30	S,I	인력 배치·선원 배치 서비스	NT MA LP	1)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 한국해양수산원에 의한 선원 교육 독점 규정
31	S	경비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제한 명시
32	S	간행물 유통	NT	외국 간행물의 수입-유통과 관련한 절차적 차별요인 명시 * 외국산 : 事前 문화부 추천 필요 * 국내산 : 事後 심사 (필요시)
33	S	항공기 정비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4	S,I	고등교육	NT MA SMBD	1) 이사회 국적 제한 명시 2) 사업 형태 제한 명시 * 반드시 비영리재단 형태로 사업 영위
35	S,I	성인교육	NT MA	1) 외국인인 영위 가능한 학원의 형태 및 종류 명시 (성인 대상, 학위 수여 금지) 2) 외국인 강사는 반드시 대졸 이상이어야 함
36	S	직업 훈련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7	S	수의 및 수산질병관리사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8	S	환경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9	S	공연 서비스	NT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진(promotion)과 관련한 절차적 차별 요인 명시 * 事前 추천 필요
40	S,I	뉴스통신 서비스	NT SMBD MA LP	1) 외국통신사는 국내통신사(연통)를 경유 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 2) 뉴스통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25%) 3)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4) 연합통신 임원에 적용되는 국적제한 명시
41	I	혈액 제재	PR	대한적십자사의 독점 영역임을 명시
42	S,I	정기간행물(신문 제외)	NT SMBD MA LP	1)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에 적용 되는 국적 요건 (한국인만 가능) 2) 정기간행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50%) 3) 외국 정기간행물의 한국내 지점은, 본국에서 편집된 내용을 국내에서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확인함 (한국어가 아닌 경우로 한정)
43	S,I	농축산물 유통	NT MA	1) 육류 도매업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50%) 2) “가축시장”은 농협 등에서만 개설할 수 있음 3) “공용도매시장”은 지자체에서 개설함을 명시 4) 서비스 chapter의 NT, MA 관련 규정은 WTO TRQ 이행을 위한 국내 제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
44	S,I	방송 서비스	NT PR SMBD MA LP	1) 방송 세부사업별 외국인투자 제한 명시 2) 국산 영화·애니메이션 쿼터 명시 3)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국적요건 명시 4) PP의 간접 투자 제한 완화 약속 명시 5) 1개국 쿼타 관련 제한 완화 약속 명시
45	I	에너지(전력)	NT	1) 한전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40%) 2) 국내 총발전 설비용량 중 외국인은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음을 명시 3) 전력의 송·배전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50%)
46	I	에너지(가스)	NT	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명시 (30%)
47	S,I	스크린 쿼타	PR MA	스크린당 73일임을 명시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교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 참고 2

## 한국의 투자·서비스분야 미래유보 44개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1	I	외국인 투자	NT PR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 도입 권한 유보
2	I, S,I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서비스의 민간 이양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다만,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NT 보장
3	I	외국인토지	NT	포괄적 유보
4	S,I	총포·도검 및 화약류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5	S,I	취약집단 (장애인, 소수 민족 출신 등 사회적 약자)	NT MFN PR SMBD LP	포괄적 유보
6	S,I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NT LP PR SMBD	포괄적 유보(* 다만, 금융 분야는 적용 제외)
7	S,I	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	NT MFN LP PR SMBD	포괄적 유보
8	S	MA 포괄유보	MA	UR GATS 양허표를 기초로, 금번 KORUS FTA협상을 통해 신규 양허한 분야를 제외 하고는 MA의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보
9	S,I	MFN 포괄 유보	MFN	1) KORUS 발효 전 협정은 MFN 적용 제외 2) KORUS 발효 후 협정에 MFN을 부여 * 단, 항공·해운·수산 분야는 MFN 제공 대상에서 제외
10	S,I	방송 서비스	MFN	위성방송 서비스 관련, MFN 포괄 유보
11	S,I	철도운송 서비스	MFN	철도운송 서비스 관련, MFN 포괄 유보
12	S,I	환경 서비스 (음용수, 생활폐수, 자연보호 등)	NT PR LP	포괄적 유보 * 단, 법령상 일부 인정되는 私人間 계약은 인정
13	S,I	원자력 에너지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14	S,I	에너지 (전력)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단, 부속서 1에 규정된 한전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은 제외
15	S,I	에너지 (가스)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단, 부속서 1에 규정된 가스공사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은 제외
16	S,I	농축산물(인삼, 쌀, 홍삼)	NT PR LP	중개, 도매, 소매 포괄 유보
17	S,I	육상 여객운송 (택시 및 정기 여객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18	S,I	육상 화물운송 (쿠리어 제외)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19	S,I	내륙주운 및 우주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20	S,I	쌀의 저장 및 보관	NT	포괄 유보
21	S,I	우정사업 (비독점 영역)	NT	우정사업본부부가 누리는 혜택 (공익 활용, 차량 대수 임의증가 권한) 유보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22	S,I	방송서비스	NT PR SMBD MA LP	다음 사항에 대해 포괄 유보 1) 매체간 교차 소유 2) 외국인외제 조항의 강화 권한(PP는 제외) 3) 이사의 국적 제한 4) 만화총량제 5) 외주제작 쿼터 등 다양한 새로운 쿼터 제도의 도입을 위한 권한 6) 방송법에 의한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제공 사업에게 국산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7) 외국방송 재송신에 관한 사항 *재송신 제도를 폐지코자 할 경우 기존의 PP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필요
23	S,I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NT PR SMBD MA LP	포괄 유보 * 방송으로 분류되던 통신으로 분류 되건, 해당 분야에 적용중인 외국인 투자 제한 수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명시
24	S,I	방송 서비스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MFN PR	포괄 유보
25	S,I	방송 서비스 (국산 영상물 인정 기준)	NT PR	포괄 유보
26	S,I	부동산 서비스 (중개-감평 제외 부동산)	NT PR LP	포괄 유보
27	S,I	지급 불능 및 구조조정 (법정 관리) 서비스	NT SMBD LP	포괄 유보
28	S,I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	NT MFN PR LP	포괄 유보 * 국산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질 때 활용 가능한 유보안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오디오·비디오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도입 가능
29	S,I	지적총량 및 관련 지도제작	NT	포괄 유보
30	S,I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등급판정	NT LP	포괄 유보
31	S,I	농업·수렵·임업·어업 부수 서비스	NT PR SMBD LP	포괄 유보 * 인공수정, 유전적 개량, 배 및 보리의 도정, 미국 중합 처리장 관련 활동 등
32	I	어업	NT	포괄 유보
33	S,I	신문 발행 및 배포	NT SMBD LP	포괄 유보
34	S,I	교육 서비스 (유아, 초·중등, 고등, 기타)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35	S,I	보건의료 서비스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 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설립 가능한 영리 병원 예외
36	S,I	영화 서비스 (스크린쿼터를 제외한 여타 사항)	NT MFN PR LP	영화의 진흥(promotion), 광고, 후반제작 등에 대해 포괄 유보
37	S,I	문화재 보호	NT PR SMBD LP	포괄 유보
38	I	농어촌 관광	NT	포괄 유보
39	S,I	법률 - 외국법 자문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0	S,I	회계 - 외국 공인회계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1	S,I	세무 - 외국 세무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2	S	전략물자	NT LP	포괄 유보
43	I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	NT PR SMBD	포괄 유보
44	S,I	해운 - cabotage, 해상 여객 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 S:서비스, I:투자, NT:내국인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 참고 3

### 한국의 금융분야 현재·미래유보 18개

번호	성격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1	현재	보험	MA	1)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의 2인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장소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2)보험판매 창구 수 등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하고, 단일 보험업자에 의한 보험상품의 은행판매 비율에 대해 제한
2	현재	보험	CBT	“강제적인” 보험 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 외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음. *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
3	현재	은행·기타	NT	1)외국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한국의 상업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10% 초과 보유 가능 2)-금융위는 소유권 승인여부에 대한 추가적 승인기준 적용 -자연인은 지분 10% 초과 보유 불가 -주요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비금융기관은 지분 4% 초과 보유 불가. 단, 의결권 행사 능력 포기시 10%까지 가능
4	현재	은행·기타	NT	외국은행의 지정 설치에 대한 개별 인가 요구조건 명시 *단, 자회사인 은행의 지정은 인가 불요
5	현재	은행·기타	MA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한국에서 증권·선물시장 운용 가능
6	현재	은행·기타	MA	증권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비상장 증권의 예탁자 또는 증권회사 계정 간 증권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 가능
7	현재	은행·기타	MA	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만이 증권·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결제 업무 수행 가능
8	현재	은행·기타	CBT	한국 거주자·금융기관·외국기관지점은 한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역외 선물, 옵션, 특정 선도계약 체결 가능
9	현재	은행·기타	NT	1)외국은행·증권회사 지점의 영업기금 유지 의무 2)외국 지점은 그 본점과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
10	현재	은행·기타	MA	외국금융기관 지점은 다음 업무 수행 불가 1)신용협동조합 2)상호저축은행 3)여신전문금융회사 4)종합금융회사 5)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6)신용정보회사 7)일반펀드시무관리회사 8)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9)채권평가회사
11	현재	은행·기타	MA	국내에서 일정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 가능
12	현재	은행·기타	NT	정부지원기관(산은, 기은,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에 대해 채권보증, 손실 보전, 조세 면제 등 특별대우 부여 가능
13	현재	은행·기타	SMBD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 의 모든 구성원은 한국 국민이어야 함.
14	현재	은행·기타	NT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 보유 금융기관 수 제한 가능
15	현재	은행·기타	MA	원화 현물환거래의 은행간 중개업은 기존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
16	미래	보험	CBT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 구매 의무 충족 여부 결정시 외국에서 공급된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을 권리 유보 *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
17	미래	은행·기타	NT	정부 소유·지배 기관을 민영화 할 경우, 계속적 보증 및 한시적 추가 보증을 채택할 포괄적 권리 유보
18	미래	은행·기타	NT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 유보

※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MA:시장접근, CBT:국경간 무역,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ISD****1. 국제표준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ISD는 우리가 맺은 6개 FTA, 81개 투자협정 뿐만 아니라 전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에도 들어 있어요.

더욱이 최근 5년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규모보다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ISD는 오히려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제도지요.

**2. 한-미 FTA에 있는 ISD는 특별하다.**

한-미 FTA의 ISD는 우리가 이미 체결한 6개 FTA나 81개 투자협정과 같아요.

오히려 2006년 7월에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Task Force에서 ISD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용과 절차 면에서 다른 FTA보다 개선됐어요.

**3. 우리 현행법에 보호되지 않는 “투자”까지 미국 투자자를 보호해준다.**

한-미 FTA는 미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현행법상 투자의 범위보다 확대하지 않아요.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만 보호해준다는 의미죠.

**4. ISD는 외국인투자자 보호가 지나쳐 내국민대우와 배치된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를 내국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예요.

우리 투자자도 해외에서 그 나라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니까요.

**5. ISD가 도입되면 사법주권이 훼손된다.**

우리 사법주권은 그대로 유지 되지요.

우리가 이미 체결한 81개 투자협정과 2500여개 전세계 투자협정들이 모두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6. ISD는 우리에게 불리하다.**

최근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보다 3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ISD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제도이지요.

해외투자를 많이 하는 우리 기업들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성명도 발표했어요.

## 7. 간접수용은 우리 헌법의 재산권 조항과 충돌하여 위헌이다.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도 간접수용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요.

또한 한-미 FTA 협정은 환경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 8.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침해 받는다.

정부의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정책은 ISD 제소 위험이 없어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협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교육·에너지 등 44개 분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권한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정문에 우리 공공정책의 자율권을 명시하고 있죠.

## 9. 용도지역을 제한하는 부동산정책은 ISD의 대상이 된다.

국토의 계획적 이용을 위해 내외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린벨트지정, 용도 지역 제한과 같은 정부의 조치는 ISD 제소 위험이 없어요.

## 10. 지자체의 인·허가 처분이 지연될 경우 간접수용으로 제소가 가능하다.

인가가 지연으로 일시적인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ISD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정부가 정당한 요건을 갖춘 허가발급을 거부하여 영구적인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간접수용이 인정될 수 있어요.

## 11.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해 패소하기 전에도 우리의 규제 정책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

정부의 공공정책이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경우 정부가 ISD 제소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특히, 공공정책상 필요한 분야는 협정문에 우리 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두었죠.

## 12. ISD 대상에 지자체의 투자계약까지 포함시켜 사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

지자체의 투자계약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체결한 투자계약은 인천 제2연육교 건설사업이 유일하죠.

### 13.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우체국 택배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우체국 택배는 현재 국내 민간업체 및 외국 특송업체와 경쟁해 오고 있고, 기존 집배 네트워크를 그대로 택배 사업에서도 활용함으로써 이미 국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죠.

### 14. 미국 기업의 대한민국 공공정책 무력화 시도로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한-미 FTA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비는 지금처럼 보건복지부가 결정하게 되지요.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 15. 미국에서 하룻밤 입원해 몇 가지 검사만 받고 천만원이나 되는 고지서를 받아본 MBC기자입니다. 당신의 두려움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건 미국의 이야기이지요. 미국 의료시스템은 우리가 절대 도입하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건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우리 정부정책의 자율성에는 변화가 없어요.

### 16. ISD는 미국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다.

ISD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도입니다.

미국에게만 유리하다면 왜 전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에 포함 되었을까요?

ISD는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자국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지요.

### 17. ISD에서 미국의 승률이 높다

미국의 승률이 높지 않아요. 실제 미국기업이 제소한 108건 중에 승소는 15건에 불과하고 패소는 22건이나 되요.

### 18. ISD를 통한 미국 투자자의 남소가능성이 우려된다.

정부 조치가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경우는 ISD 제소를 할 수 없어요.

미국 기업도 소송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중재판정이 내려지기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무분별하게 제소를 하겠어요?



## 19. 자동동의조항은 불합리하다.

자동동의조항은 ISD제도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ISD를 도입한 대부분의 투자협정과 FTA에도 반영되어 있구요.

만일 투자유치국이 국제중재재판을 거부한다면 우리 투자자는 안심하고 외국에 투자할 수 없겠지요?

## 20. 당초 정부는 ISD에 반대했었다.

ISD를 반영하는 것은 협상초기부터 우리의 입장이었어요.

다만, ISD 제소요건 등 세부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부 입장을 결정한 후, 우리 의견을 반영했었죠.

## 21.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미국에서도 ISD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 한-미 FTA에 ISD를 규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죠.

이것은 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ISD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와 같은 것이죠

## 22. 호주-미국 FTA는 ISD가 포함되지 않았다.

자원 부국인 호주는 국내 자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고, 미국과의 FTA 협상 당시에 호주기업의 대미투자가 많지 않아 ISD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죠.

호주는 현재 기체결 FTA 6개 중 4개에 ISD를 포함하고 있으며, 23개국과 체결한 BIT 대부분이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 23. BIT 보다 FTA에서 제소가 더 많다

양자투자협정(BIT)에서의 제소가 FTA보다 더 많아요.

현재 390건의 ISD 제소중 BIT는 303건, FTA는 51건이죠.

## 24.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왜 ISD를 논의하지 않고 미국과만 하는지 이유를 밝혀라

한-EU FTA 협상 상대인 EU 집행위는 “투자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협상 권한이 없고 각 회원국에 있어요.

대다수 EU 개별국들과의 투자협정은 이미 체결하였고, ISD 조항을 반영했지요.

**25. 소포우편배달 서비스 경쟁사인 UPS가 캐나다 우편공사의 자회사인 Purolator라는 택배회사에 의한 소포독점서비스가 법적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캐나다를 제소하였는데, 만일 캐나다가 패소할 경우, 우편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여 산간벽지에 우편서비스 공급이 불가하다**

2007.6월 캐나다 정부의 승소(투자자인 UPS社 패소)로 마무리되었죠.  
더 이상 논란이 불필요한 케이스군요.

**26. 미시시피 주 법원이 캐나다 장례 업체인 Loewen사에 대해 공정 거래법 위반 등으로 합계 5억달러의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판결하자 동 판결의 내용이 수용에 해당된다며 제소했다**

국제중재판정부는 Loewen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Loewen사는 캐나다 법원에 항소하여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어요.  
더 이상 논란이 불필요한 케이스예요.

**27. 캐나다 우편공사가 발주하려는 우편시설 관리계약 입찰을 준비중 이던 트라멜 크로社는 우편공사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고 입찰계획을 취소한 것을 NAFTA협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트라멜 크로社가 제소를 철회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 되었죠.  
스스로 사건을 포기한 것이므로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할 것 같네요.

**28. 미국의 영리병원 센추리온이 한국의 의료보험과 내용이 비슷한 캐나다의 무상의료 제도(연방보건법)를 제소했다**

동 사례는 공적건강보험이 아닌 외과수술시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 분쟁이에요.  
캐나다는 우리와 달리 보건의료서비스를 NAFTA에 유보하지 않았죠.

**29. 볼리비아 정부가 미 벡텔사에 수도사업을 매각한 후 물값이 4배로 치솟아 주민들이 봉기하자, 정부가 벡텔사의 수도사업권을 취소 했는데 벡텔사는 이를 부당하다며 볼리비아 정부를 ISD에 제소했다.**

'98년에 볼리비아에서 물값이 많이 오른 적이 있지요.  
그 원인은 투자협정에서 볼리비아 정부가 수도요금 결정 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이지요.  
이를 우려하여 한-미 FTA에서는 정부의 수도요금 결정 권한을 보장해 놓았어요.  
물값이 상승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30. NAFTA 체결 후 환경정책이 무력화된 사례로 미국의 메탈클래드社가 멕시코 정부를 제소하여 1,700만불의 배상을 받아냄.**

멕시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고 상당한 투자가 진행된 상태에서 관할권이 없는 시 정부가 건축중단을 명령하고 사업허가를 거부한 사례지요.

기업의 부지매입, 건축비용 등 정당한 투자가치가 전면적으로 부인된 전형적인 부당한 사례죠.

**31. 캐나다 정부는 환경 및 공중보건을 위해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가솔린 첨가제 MMT의 수입을 금지하자 제품생산업체인 미국의 에틸사는 제소하여 1,300만불을 받아냄**

환경보호로 위장하여 수입을 규제하고 자국 생산업체를 우대한 사례지요.

캐나다 정부는 MMT에 대한 수입과 州간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서 캐나다 내 MMT 생산과 유통은 계속 허용했어요.

이런 차별적 조치로 인해 수입업체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지요.

**32. 조세정책이 무력화된 사례로, 멕시코 정부의 고과당 옥수수시럽 등 설탕의 감미료에 대해 20%의 소비세를 부과하자 멕시코내 고과당 옥수수시럽 공급업체인 카길사가 제소하여 7,730만불 받아냄**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고과당 옥수수시럽이 인기가 있자 위기감을 느낀 멕시코 설탕업체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자국 설탕업체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 고과당 옥수수시럽을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2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했어요.

이런 경우는 꼭 ISD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겠지요.

**33. 납중독을 일으킨 미 다국적 기업 렌코는 페루 정부를 상대로 1조원 소송제기**

현재 중재판정이 진행 중이에요.

페루정부는 렌코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렌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소송 등이 제기되었을 때 페루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정작 납중독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자 페루정부가 투자협약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아 렌코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죠.

**34. 과테말라의 철도운영사업권을 뺀 미국회사(RDC)의 자회사(FVG)가 철로 위 불법 거주자를 쫓아내지 않는다고 제소**

현재 중재판정이 진행 중이에요.

철도사업을 하는 투자자에게 철로장비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례죠.

## **(2) 공공요금 및 민영화**

### **35.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지금처럼 갖고 있죠.

### **36.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결정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어요.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 요금에 대해 정부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 **37. FTA협정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제가 폐지됐고 이에 따라 시장개방형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가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다.**

한·미 FTA에 공기업 민영화를 약속한 건 없어요. 공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권한과 외국인 투자 한도 제한은 계속 유지되고요.

### **38. 한-미 FTA를 통과 시키기 위해 인천공항 매각을 백지화 했다**

한-미 FTA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죠.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은 공항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거니까 이를 한-미 FTA와 연결 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 **39. 일단 개방된 것은 되돌릴 수 없어 한국에 매우 불리하다.**

레칫 조항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FTA 등에서도 이미 채택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건, 환경, 사회서비스 등 향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44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제든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한-미 FTA 협정문에 정책권한을 유보해놓고 있어요.

### **40. 공기업들이 민영화 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상의 외국인소유 지분제한 규제(각각 40%, 30%)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여타 공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 제한을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권한을 협정문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한·미 FTA에서 추가 약속한 건 없어요.

### **(3) 농업**

#### **41.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안보가 흔들린다**

한-미 FTA에서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었죠.

따라서, 한-미 FTA로 쌀이 개방되었다거나 식량안보가 흔들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쌀 농가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보조금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유지될 거예요.

#### **42.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조치도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의 대상이 된다.**

ISD는 투자 분야에 적용되는 소송제도로서 위생검역과는 별개의 사안이에요.

한-미 FTA 협정문에서도 검역조치와 관련되는 분쟁사항은 FTA 절차에 회부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 **43.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

작년 11월 사망한 50대 여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과는 증상이 유사하나 “뇌질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때문으로 의료계도 최종 판정을 했어요.

이것은 쇠고기 수입이나 광우병과는 무관한 것이지요.

#### **44. 한-미 FTA는 미국의 막대한 농업보조금을 시정시킬 그 어떠한 진전된 규정도 없다. 완벽한 면죄부다.**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게 되면, 우리 정부의 농업보조금도 동일하게 제한받게 되요.

농업보조금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쌀 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정책을 지금처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 **45. 우리의 농축수산업이 무너진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15개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등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어요.

더욱이, 한-미 FTA 비준 이전에도 FTA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08년부터 FTA 국내보완대책을 이미 추진했죠.

**46. 한-미 FTA는 미국이 장차 식품수출을 통제할 경우에 대비한 어떠한 진전된 내용도 없다.**

WTO협정은 자국의 식량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한 수출금지나 제한조치를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동일하게 허용되는 한-미 FTA 협정이전에 WTO 협정상외의 권리에요.

**47. 한-미 FTA 협정문 2장 '부속서 2-나'로 인해서 한-미 FTA로 WTO 관세화 협정과정에서 한국이 확보했던 농산물 관세구조가 완전히 제거된다**

한-미 FTA 협정문은 WTO 관세화와는 별개의 사안이에요.

따라서, WTO 관세화 협상에서 확보한 농산물 관세구조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게는 그대로 유지되죠.

**48. 농축수산분야 지원대책이 미흡하고 기존 내용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07. 11월 21.1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여 '08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11. 8월에는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대책을 수정, 보완하면서 지원 규모도 1조원 늘려 22.1조원이 되었고요.

기존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업용 면세유공급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하고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했지요. 정부는 농축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4) 의료 및 복지**

**49.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약산업 모두 무너진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사전에 특허침해여부를 점검하여, 특허권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신약 개발을 촉진토록 하는 제도지요.

더불어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07년부터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하여 추진 중이지요.

## 50. 한-미 FTA로 인해 약값이 상승한다.

현재 우리 건강보험제도에 따르면 신약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와 협상으로, 복제약 가격은 신약 가격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 구조지요.

그런데 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대상이 아니니까 한-미 FTA로 약값이 폭등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 51. '독립적 검토절차(Independent Review Process)' 도입으로 약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금 신약의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와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구조이지요.

독립적 검토절차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원래의 결정을 다시 번복하거나 하는 구속력은 없어요.

## 52.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것 아니냐?

한-미 FTA와 영리병원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지요.

한-미 FTA 이전인 2003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의료법 등 관련 국내 법규를 위반할 때는 제제와 취소가 가능하니 문제될게 없지요.

## 53. 제약산업에 대한 피해대책이 없는것 아닌지?

정부는 한-미 FTA 때문에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영세한 일부 국내제약업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미 '07년부터 약 1조원 규모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죠.

제약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R&D 투자확대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제약산업을 만든다는게 핵심이죠.

## 54. 한-미 FTA는 반서민-반복지 정책이다.

한-미 FTA에서는 장애인이나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보장해 놓았지요.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정책은 지금처럼 추진될 수 있으니까 한-미 FTA가 반서민-반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또, 한-미FTA는 서민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거고요.

## **(5) 경제효과**

### **55. 정부의 FTA 효과 예상 다 빗나갔다. 온통 장미 빛이다.**

발효 중인 FTA의 수출증대 효과는 그 동안의 대세계 수출증가율보다 대체로 크지요. 한편, 한-칠레 FTA의 경우 FTA가 체결되면 국내 포도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국산 포도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재배면적도 증가했지요. FTA 효과,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 **56. 도대체 미국과 FTA를 하면 뭐가 좋다는 건지 제대로 된 분석이 없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간 경제성장 5.7%, 고용창출 35만여개, 무역수지는 27억불 증가하죠.

좋아지는 것은 세계 최대시장의 선점과 무역장벽의 철폐,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 등 정말로 많아요. 이러한 이유로 일본도 미국 등과의 FTA를 서두르고 있죠.

### **57. 추가협상은 미국에만 유리하다. 이른바 이익균형이 완전 깨졌다.**

이해관계자인 관련 업계 판단이 중요하지요.

완성차나 부품업계는 추가협상 결과를 환영했어요.

그 외 돼지고기나 의약품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난 분야이지요.

### **58.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데 우리는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고, 세계 각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므로 소폭의 가격인하만 발생해도 우리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거예요.

### **59. 한-미 FTA 경제적 효과는 조작되었다.**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분석했어요.

여기에 분석한 방법과 결과를 민간 전문가들이 검증해 주었죠. 또 2007년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시뮬레이션도 했었죠.

### **60. 생산성 향상효과는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관세감축에 따른 효과만을 보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시각이에요.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개방에 따른 경쟁심화, 선진 기술의 이전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중국, 호주 등도 생산성 증대효과를 반영했어요.



**(1) 기업****1. 한-미 FTA의 산업별 기대효과가 크다**

한-미 FTA로 미국의 관세가 철폐되면 자동차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자, 기계 등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걸쳐 대미 수출이 늘어나죠

특히,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대기업 납품을 통한 간접 수출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발효를 기다리는 이유죠.

**2. 한-미 FTA로 대세계 수출 증대 효과도 확대된다**

한-미 FTA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해외 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으로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동시에 증가하죠. 이로 인한 대세계 수출이 연평균 31.7억\$이나 확대될 거예요.

**3. 한-미 FTA로 중소기업의 기회요인에 대한 기대가 높다**

중소기업들도 한-미 FTA를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54.7%가 납품업체의 대미 수출확대에 따른 매출증가를 한-미 FTA의 가장 큰 기회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소기업이 발효를 기다리는 이유죠.

**4. 한-미 FTA로 통신시장이 개방되어 매출이 증가된다**

통신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면 우리 통신시장이 확대되어 매년 약 700억원씩 매출이 늘어나요.

**5. 미국의 낮은 수입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관세철폐 효과가 크다**

수입관세율(0~3%)이 낮아도 미국은 1.9조불의 세계 최대 수입시장이고 많은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관세철폐도 큰 효과를 가져오지요

또한, 자동차, 부품·소재, 타이어, 섬유 등은 여전히 관세율이 2.2~13% 수준이라서 관세철폐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요.

**6. 자동차의 미국 현지생산으로 경제적 효과가 배가된다**

국내 브랜드 자동차의 미국 현지생산에 힘입어서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품질도 인정받게 되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가 배가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자동차 업계도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게 되어 자동차 부품 수출이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 **7. 기계제품의 판매 향상이 기대된다.**

미국시장에서 우리제품이 경쟁관계인 일본산에 비해 15~20%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관세(9-2.5%)가 철폐되면 가격 격차가 더 커져 판매가 더욱 늘어나겠죠.

### **8. 전자제품의 미국시장 진출이 호조세를 보인다**

한국산 전자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관세까지 철폐된다면 가격경쟁력도 높아져 수출에 날개를 달겠지요.

### **9. 석유화학 분야의 미국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석유화학품인 폴리프로필렌, 에폭시 등에서 수출이 늘고, 생활용품과 항공기 연료 등은 480만불 정도 수출이 늘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보고 있어요.

특히, 포장용 필름, 파이프, 완구 등에 두루 쓰이는데 폴리프로필렌은 6.5%의 미국 수입관세가 발효와 함께 즉시 철폐되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10. 한-미 FTA로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한-미 FTA로 인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자동차 부품, 섬유 등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요.

이와 더불어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대기업 납품을 통한 간접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되구요. 우리 중소기업이 발효를 기다리는 이유죠.

### **11. 한-미 FTA 계기로 제도 선진화와 브랜드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이 국제수준으로 선진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면 한국이라는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되죠.

### **12. 한-미 FTA로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한-미 FTA로 미국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중간재 수입비용이 감소하여 제조원가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더하여, 관세 인하분까지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 **13. 한-미 FTA로 섬유산업의 수출이 늘어난다.**

섬유산업은 중소기업이 90%를 차지하는 업종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가 약 13%예요. 만약 한-미 FTA로 미국의 섬유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에 비해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 연간 1.5억불의 수출증가 효과가 예상되고 있어요.

#### 14. 한-미 FTA로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의 문이 넓어진다.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수준이 입찰금액 기준으로 20만불에서 10만불로 낮아져, 공구절삭기, 문서세단기, 리튬전지 분야 등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국내 정부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 15. 한-미 FTA로 미국시장 수출품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철폐된다.

현재 대미 수출시 통관 과정에서 수출 건당 최대 485불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이 되었죠.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은 다른 경쟁국 기업들과는 달리 이 수수료의 부과대상이 안 되지요.

#### 16. 한-미 FTA로 대-중소기업 협력관계가 활성화된다

한-미 FTA로 미국의 관세가 철폐되면 자동차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자, 기계 등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걸쳐 대미 수출이 늘어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협력관계를 고려하면 중소기업들의 직접적인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대기업 납품을 통한 간접수출 증대 효과도 크게 나타나서 대-중소기업 협력관계가 활성화 될 수 있어요.

#### 17. 한-미 FTA로 지역산업이 활성화 된다

2010년도 우리나라 대미 수출규모는 498억불로 2005년 보다 20.5%나 증가하였으며 대미 수출기업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한-미 FTA체결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 18. 한-미 FTA로 수입시장이 다변화되어 가격경쟁력을 높인다.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섬유 등에서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반면 일부 품목에서는 수입확대도 전망되지요.

그렇지만 수입선의 다양화를 통한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고, 또한 생산원가가 낮아지게 되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고려하면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좋은 면도 많이 있어요.

## 19. 한-미 FTA로 미국기업의 국내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투자 개방 및 확대에 따라 미국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가 전망되고 있어요. 한편, 한·미 FTA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우리에게 대한 투자도 기대되고요.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투자유치가 보다 활성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요.

## 20. 한-미 FTA로 미국의 선진 서비스 제도가 들어온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나, 생계형 업종의 비중이 높고 고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은 낮은 편이죠.

그러나 한-미FTA가 발효되면 법률, 회계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가 단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내수 생계형위주에서 금융 법률 등 지식기반형 산업구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요.

## (2) 소비자

### 21. 한-미 FTA로 소비자 혜택이 풍성합니다.

삼겹살, 치즈, 감자, 포도 등 미국산 농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보다 저렴해진 가격으로 선택폭이 넓어져 소비자 혜택이 풍성해져요.

미국산 생삼겹살 관세 22.5%, 미국산 치즈 관세 36% 점진 철폐되죠.

### 22. 한-미 FTA로 농산물 소비자 가격이 내려갑니다

관세 철폐로 캘리포니아 포도(45%), 체리(24%), 자몽(30%), 오렌지(50%) 등 미국산 과일 가격이 내려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요.

또한 호두, 해바라기씨, 아몬드 등 미국산 기호식품의 가격도 내려가요.

### 23. 한-미 FTA로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즐긴다

미국산 화장품 관세 8%와 셔츠, 청바지 등 의류 관세 13%가 즉시 철폐되면 품질 좋은 미국산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 24. 캘리포니아산 와인을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와인은 15% 관세가 부과되는 고관세 품목이에요.

한-미FTA로 미국산 와인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되죠.

## 25. 닭가슴살과 같은 다이어트 식품을 더욱 저렴하게 즐긴다

수입산 닭가슴살(18%)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닭고기 7마리중 1마리가 수입산일 정도로 수입산 닭고기의 국내 점유율은 높은 편이며, 미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높아요.

## 26.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도 관세혜택을 본다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이 5년 후 관세 8%가 완전 철폐되면 온라인을 통해 훨씬 저렴하게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요.

또한 의류에 부과되는 13%와 핸드백에 부과되는 8% 관세가 철폐되어 동일하게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 27. 한-미 FTA로 파견근로자의 비자 갱신 불편함이 해소한다

한-미 FTA로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 유효기간이 1년 또는 3년에서 모두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불편함을 겪었던 우리 근로자들과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 28. 한-미 FTA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해소에 도움이 된다

FTA 체결국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없어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크게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해외 투자도 증대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돼요.

## 29. 한-미 FTA로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지식기반 업종인 금융, 보험, 컨설팅, 출판·방송 등의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청년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죠.

## 30. 한-미 FTA로 제조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한-미FTA 관세철폐 효과를 톡톡히 보는 분야로 장기적으로 약 8만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제조업 분야에서도 특히 우리의 수출 주력 업종인 자동차, 섬유, 전기, 전자 등의 업종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예요.

## 31. 한-미 FTA로 유망 직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미국과의 교류 확대로 통상, 통번역, 협상, 물류, 유통, 문화, 금융, 법률 등 직종이 유망할 전망이죠.

특히, 국제통상,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 전문 국제업무 변호사 및 컨설턴트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 **32. 방송시장도 개방되어 방송채널이 다양화 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을 제외한 채널에 한하여 외국 방송사가 우리나라에 현지법인 설립시 투자한도가 확대되어, 많은 진출이 기대돼요. 이는 프리즌 브레이크와 같은 미국의 인기드라마를 한국에서도 동시에 시청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죠.

### **33. 한-미 FTA가 체결되어도 문화생활을 위한 콘텐츠 접근,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한-미FTA로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저작권 침해된다?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인터넷검색 언제든지 가능하죠.

영화 상영관에 캠코더 소지로 처벌된다? 그렇지 않아요. 복제, 전송 목적이 없으면 처벌은 되지 않죠.

### **34. 한-미 FTA로 인한 문화생활의 불편함은 없다.**

한-미FTA가 도입되면 캠코더만 갖고 있어도 영화관에서 처벌된다?

그렇지 않아요. 캠코더 등으로 도촬하거나 도촬하려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며,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 **35. 한-미 FTA로 인터넷 검색행위는 간접받지 않는다.**

“한-미FTA로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에 침해될 수 있다“는 오해예요.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 과정의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침해가 되지 않아요.

### **36. 한-미 FTA로 자동차의 세제부담이 경감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관련 세제부담이 대폭 경감되어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현재 5단계로 되어 있으나 한-미FTA 발효되면 3단계로, 자동차 구입시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도 3단계(0~10%)에서 2단계(0~5%)로 단순화되고 세율도 낮아져요.

### **37. 한-미 FTA로 다양한 배기량의 자동차가 시장에 나온다.**

한-미 FTA로 자동차세 부과의 기준점이던 2000cc 기준이 사라져요.

FTA가 발효되면 16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세에 구매받지 않고 2400cc, 2500cc 등의 다양한 자동차들을 구매할 수 있어요

### 38. 온국민의 애호식품, 삼겹살을 저렴하게 즐긴다.

수입산 생삼겹살(22.5%)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되요.

미국산 생삼겹살은 전체 수입 생삼겹살의 절반에 가깝죠.

생삼겹살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 주부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줄어들고,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삼겹살을 즐길 수 있게죠?

### 39. 한-미 FTA로 원산지 표시제도가 개선된다.

한-미 FTA를 계기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원산지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돼요.

한-미 FTA를 계기로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게 되죠.

### 40. 한-미 FTA로 법률서비스가 더 다양해진다

한-미FTA는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요.

발효 5년 후에는 국내로펌과 합작사업체 설립을 통한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어 기업들의 법률 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대될 거예요.

## 한미 FTA 비준에 대한 경제단체 합동 성명서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인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럽의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지금 한미 FTA 비준은 300만 중소기업을 비롯한 우리 경제계 모두에게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자동차산업 5,000여 중소부품업체 30만 근로자, 섬유·패션업계 2만여 중소기업체 80만 근로자를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경제인 들은 한미 FTA 비준을 계기로 앞으로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한미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2011.11.22

대한민국 경제단체 일동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은행연합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중소기업계, 한-미 FTA 국회비준 환영

중소기업계는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미국의 신용강등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은 한·미 양국을 위해 좋은 결과이다. 우리 경제는 한·미 FTA를 통해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과의 무역·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치열해진 국제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미국시장 선점을 통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섬유 등 한-미 FTA를 통해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은 경제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수출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정밀기계(의료기계 등), 화장품, 제약, 서비스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미국시장 전략품목의 현지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지향형 Small Giants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부와 협조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산업별로 적합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1. 11. 22

중소기업중앙회

## 한미 FTA 비준안 본회의 통과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는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내년 1월부터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입법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의 경제고속도로가 구축되고 대한민국이 유럽·아시아·북미 3대륙을 잇는 자유무역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며,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세계적인 불황위기의 능동적 극복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피해발생 부문에 대한 FTA 보완대책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선점을 위해 FTA 활용방안을 알리고 특혜관세 이용을 돕는 등의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 韓美 FTA 국회 비준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

우리 경영계는 금일(11.22)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정치논쟁과 물리적 충돌을 보인 국회의 처리 과정은 안타깝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수결 처리 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세계최대 경제국 미국과의 FTA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적 이익을 도외시 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로 한미 FTA를 강력히 반대해온 야당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비록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겪었으나, 정치권, 기업, 근로자,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는 오늘 국회의 결정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2011년 11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미 FTA 비준 처리 환영

전경련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회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며 국익과 국민을 위한 한·미 FTA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제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한·미 FTA의 체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초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1. 11. 22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미 FTA 국회 통과관련 자동차업계 성명서

- 우리 자동차업계는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 조만간 한·미 FTA가 발효되면 1,500만대 규모의 거대 미국자동차시장을 우리업계가 선점하여 국산차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특히, 對美 자동차 수출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관세(최대 4%)가 즉시 철폐됨으로써 수출이 크게 늘어나 약 3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5,000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우리 자동차업계는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1. 11. 22.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한 국 섬 유 산 업 연 합 회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전략기획팀 TEL: (02) 528-4030, FAX: (02) 528-4070

## ●수신:

2011. 11.	보도자료	담당부서	FTA지원센터
		담당자	염규배 센터장
		문의전화	528-4053

## 섬유패션업계, '한-미 FTA 국회비준' 환영

### - 수출신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재도약의 계기로 -

-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한-미 FTA는 우리 섬유패션산업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 수출증대와 아울러 향후 고급화·차별화 제품 생산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5%이나, 섬유분야 평균관세율은 13.1%(최대 32%)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한-미 FTA 발효시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요 경쟁국인 일본, 캐나다, 대만, 중국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 개선으로 미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국산섬유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강화, 외국인 국내투자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섬산련 노희찬 회장은 “이번 한-미 FTA 비준안 통과로 우리제품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해 수출신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섬유패션기업들의 한-미 FTA 적극적인 활용 및 의무이행을 위해 정부당국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

## 즉시 보도바랍니다

문의 : FTA통상실 최용민 실장(6000-5395)

---

### 국회의 한·미 FTA 비준 동의에 대한 환영 FTA민간대책위원회 환영 성명

FTA민간대책위원회는 금일 우리 국회의 한·EU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환영한다. 한·미 FTA는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한국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데 새로운 성장엔진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안정적인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 EU, ASEAN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FTA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게 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FTA 네트워크의 구축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는 FTA 비준 동의 과정에서 겪은 갈등을 봉합하고, FTA 활용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하여 고용창출에 앞장서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공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신동규





## 제2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 I. ISD 제도란 ?
- II. 한·미 FTA의 ISD 제도는 어떤 모습인가 ?
- III. ISD에 대한 오해, 진실은 ?



## I ISD 제도란 ?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 보호장치

-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ISD)는 반세기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 임.
  - 전세계 2,676개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
- 우리는 1970년대부터 양자간 투자협정(BIT)에 도입해 왔음.
  - 우리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모든 FTA(7개중 한·EU FTA를 제외한 6개)와 85개 BIT 중 81개에 포함(ISD 절차인 ICSID에 우리나라는 1967년 가입)
    - ※ EU 회원국들과는 개별 투자협정에서 ISD를 반영
- ISD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함.
  -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외국인 투자보다 크므로, ISD 제도를 통한 우리의 해외투자 보호가 긴요
    - ※ 우리의 대세계·대미 해외투자·투자유치 규모 (2011.6월까지 누적금액)
      - 對세계 : (한국→세계) 2,675.8억불, (세계→한국) 1,789.5억불
      - 對미국 : (한국→미국) 533.8억불, (미국→한국) 448.9억불
    - (☞ 제4편 한·미간 투자통계 참고)
  - 우리 해외투자가 집중된 중국과의 투자보장협정을 2007년 개정하여 ISD 조항을 강화

-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규모가 계속 확대 추세에 있는데, 미국내 경쟁국 투자는 ISD로 보호받는데 우리 투자는 ISD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곤란
- 투자유치국의 국내소송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공정한 사법 구제수단을 확보함으로써 투자 안정을 제고
  - 소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소송에 따른 매물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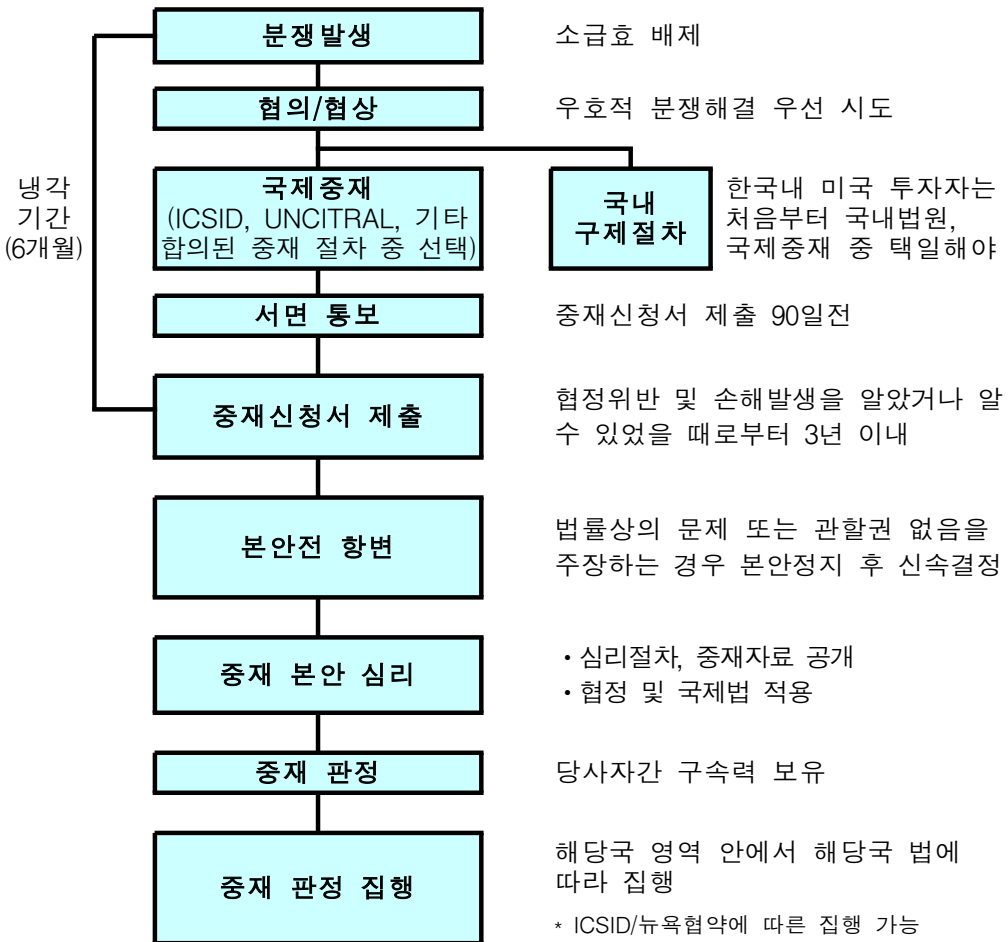
II

# 한·미 FTA의 ISD 제도는 어떤 모습인가 ?

## 1 한·미 FTA의 ISD 개요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

< ISD 절차 개요도 >



## 2 실체적 요건

한·미 FTA는 1994년 NAFTA나 2004년 미국 모델 투자협정상의 제반 실체적·절차적 요소를 대폭 개선하여 공정성, 투명성을 향상(☞ 참고 4)

### 1. 물적 대상: 투자(investment)

- ☐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투자의 특징을 지닌 자산(예시적·개방적) (제11.28조)

### 2. 인적 대상: 투자자(investor)

- ☐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attempts to make, is making, or has made an investment)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제11.28조)

### 3. 피소당사자(respondent)

- ☐ 피소당사자는 “국가”임(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송무업무 담당).
  - ISD 청구대상이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조치라 하더라도 투자자는 국가(중앙정부)를 상대로 ISD 청구를 제기

### 4. 중재 청구 요건(제11.16조제1항)

- ①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였을 것
- ② 그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것

## Ⅰ 협정상(제11장 (투자) 제1절) 의무 위반

### 가. 내국민대우(제11.3조)

- ☐ 외국인 투자자를 투자유치국 국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의무

### 나. 최혜국대우(제11.4조)

- ☐ 외국인 투자자를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의무

## 다. 대우의 최소기준(제11.5조)

-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예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부여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 주요 법률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사법거부 등을 하지 않을 의무 등
  - 충분한 보호 및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 : 국제관습법상 경찰보호 제공

## 라. 수용 및 보상(제11.6조)

- 수용의 요건 : ① 공공목적을 위하여, ② 비차별적 방식으로, ③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 ④ 적법절차와 최소대우기준에 따라서만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수용 또는 국유화 가능
  - 직접수용: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 또는 수용되는 경우
  - 간접수용: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equivalent) 효과를 가지는 경우
- 간접수용 (부속서11-나)
  - ☞ 한·미 FTA는 간접수용의 인정범위가 더욱 제한되도록, 간접수용 판단법리를 추가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당한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예시에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을 포함
  - 간접수용의 판단법리: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통해 결정
    - ①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 ② 정부행위가 투자에 대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 ③ 목적과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 우리 대법원의 수용 법리상 원칙인 '특별희생(special sacrifice)' 법리를 추가

- 간접수용의 원칙적 예외: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예시적 목록)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적 규제 행위는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
- 세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 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는 과세조치, 비차별적 과세 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용에 해당되지 않음(부속서11-바)

**마. 송금(제11.7조)**

- 적용대상투자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
- 한·미 FTA는 국제수지 악화 및 외환위기 등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우리 정부가 외국환거래를 통제하는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미국은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없음.)(송금부속서)

**바. 이행요건(제11.8조)**

-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산원료 이용 등 불합리한 의무 부과 금지

**사.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적 요건 등을 부과 금지

**2 투자계약**

- 외국인투자자가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체 제외)와 ① 자원채굴, ② 발전,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공급, ③ 인프라건설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서면계약이나 그 예가 거의 없음.(예 : 인천 제2연육교 건설(영국투자회사))

**3 투자인가**

- 양측은 협정 서명일 현재 투자인가기관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각주17)
  - ※ 투자계약과 투자인가가 ISD 제소대상에 포함되어 ISD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투자계약은 그 예가 거의 없으며, 투자 인가는 각주 규정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
    - 우리가 체결한 다수 BIT도 한·미 FTA의 투자계약, 투자인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계약의무 준수조항을 포함



\* 포괄적 국가계약의무 준수조항(우산 조항): 협정상 의무 위반 외에 여타 모든 투자자-국가간 분쟁을 협정상 ISD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4. ISD 기각 사유

□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기각 사유에 해당

- ① **협정의 적용배제**: 공공퇴직제도 · 법정사회보장제도, 보조금 등
- ② **예외**: 간접수용 예외(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적 규제), 필수적 안보, 비차별적 과세조치 등
- ③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정부조달, 금융, 공공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 제한 등
- ④ **현재유보 · 미래유보**: 필요시 피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회에서 해석(중재판정부는 동 해석에 따라야 함)

### 3

## 중재 절차

### 1. 중재 청구 제기(제11.16조)

#### □ 소급효 배제(제11.1조제2항)

- 발효 전에 발생한 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ISD 원용 불가

#### □ 외국 투자자는 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②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국제중재 제기 가능(제1항)

-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기업이 직접 ISD 중재청구를 할 수는 없음.

#### □ 이용 가능한 중재기관·절차(제11.16조 제3항)

- 피청구국과 외국 투자자 모두 ICSID협약 당사국인 경우: ICSID협약과 ICSID 중재절차규칙

- 양국 중 일방이 ICSID협약 비회원국인 경우: ICSID 추가절차규칙

- UNCITRAL 중재규칙

- 기타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따라 청구 제기 가능(예: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World Bank 산하 기구로 ICSID 협약은 147개국인 당사국(우리나라와 미국 포함)

\*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법 해석에 관한 UN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중재절차 및 규칙을 규정

### 2. 중재에 대한 당사국의 동의(제11.17조)

- 한·미 FTA 협정에 따른 ISD 회부에 대해 사전 동의

### 3. 국제중재와 국내제소 절차와의 관계

- 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나, 미국내 우리 투자자가 ISD 중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개시하였더라도 이를 포기하면 됨(제11.18조제2항).

- 한편, 한국내 미국 투자자는 일단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면 ISD 청구는 불가능한 특칙(Fork-in-the-road) 적용(부속서11-마)
  - ※ 택일 방식(Fork-in-the-Road): 국내법원과 국제중재중 하나를 택일

#### 4. 중재의 절차의 진행

- 중재인의 선정(제11.19조)
  -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
    -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
    -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국적의 중재인 임명 가능
      - ※ ICSID 협약에 따라 ICSID 회원국(147개)은 중재인 후보 4명, 조정인 후보 4명을 사전에 지명해 둠(총526명 등재).
- 중재의 수행(제11.20조)
  - 모든 중재절차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
  - 제소한 투자자 모국 정부 및 외부조언자(amicus curiae)의 의견제출권을 인정
  -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안전 항변 등에 대한 신속 심리 규정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권리 보전, 관할권 보장을 위해 잠정적 보호조치를 명령 가능
    - 다만, 압류를 명하거나 위반임을 주장하는 조치가 적용되는 것을 금지하지는 못함.
  - 상소절차 수립 노력
- 투명성(제11.21조)
  - 중재심리 및 제출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단, 비밀정보는 보호)
- 준거법(제11.22조)
  - 한·미 FTA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
  - 투자자가 당초 당사국 의도와 다르게 협정 해석을 임의로 하여 중재판정부가 엉뚱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 당사국 정부가 공동으로 내리는 협정의 해석 결정은 중재판정부를 구속

## 5. 중재판정의 효력(제11.26조)

□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짐(binding and final).

※ 향후 3년내 양 당사국은 중재판정의 재심을 위한 양자간 상소 메커니즘 도입 가능성을 검토 예정(부속서11-라)

□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의 지급 또는 ② 재산의 원상회복으로 한정

○ 중재판정을 통해 해당 정부조치의 취소·변경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명령은 불가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

□ 피청구국의 판정 불이행

○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 제22.9조에 따라 패널이 설치되어 국가간 분쟁해결절차가 적용

## 참고 4

### NAFTA, 美 2004 모델 BIT 및 한·미 FTA의 ISD 비교

※ 한·미 FTA는 2004년 미국 BIT 모델 문안을 기초로 수정·보완

구분	항목	1994 NAFTA(11장)	2004년 미국 모델투자협정	한·미 FTA(11장)	비고
실체적 요소	대우의 최소기준	타방당사국의 투자자를 국제법에 따라 대우(1104조)	외국인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대우기준(5조, 부속서) * 2001.7. NAFTA 자유무역위원회 해석선언 반영	외국인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대우기준(11.5조, 부속서11-가)	중재판정부의 '국제법' 확장해석에 대한 우려 불식
	수용 및 보상	수용에 대한 보상원칙만 규정(1110조) - 간접수용 정의와 판단법리 결여	수용 부속서 신설 - 간접수용 정의, 판단법리, 공공복지 목적 정책(보건, 환경, 안전)에 대한 원칙적 예외 등 규정	간접수용의 범위를 제한(부속서11-나) 0 간접수용 판단법리 ①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② 합리적 기대이익 침해 여부 ③ 정부행위의 성격 - 우리나라 수용법제의 핵심 개념인 '특별회생' 법리 추가 0 간접수용의 예외 -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 행위에 보건, 안전, 환경 외에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추가 * 예시적 열거임을 각주19에 명기	* 2004 미국 모델 BIT의 수용부속서 내용을 도입, 증보  ※ 보상대상에서 '재산상 이익(property interest)'을 제외하여 '재산권 (property right)'으로 한정(부속서한)
	과세와 수용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별도의 부속서 채택(부속서 11-바) -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이 아님	* 과세조치의 수용 해당 여부는 사전에 양국의 조세 당국에 우선 회부(제23조)
	단기 세이프가드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별도의 부속서 채택(부속서 11-사) - 국제수지악화, 외환위기 등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시 외국환거래 통제 가능 *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 의무방면이 아니므로 ISD 대상이 아님.	단기 SG 발동근거 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6조 및 IMF 규정에 의거 * 우리나라만 발동 가능
절차적 요소	중재인 선정	90일내 중재판정부 미구성시, ICSID 사무총장이 임명 - 의장중재인 명부(45인) 에서 제3국인 임명(1124조)	75일내 중재판정부 미구성시, ICSID 사무총장이 임명 - 의장중재인 국적요건 없음	75일내 중재판정부 미구성시, ICSID 사무총장이 임명 -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의장중재인은 제3국인으로 임명 (11.1933항)	신속 절차

구분	항목	1994 NAFTA(11장)	2004년 미국 모델투자협정	한·미 FTA(11장)	비고
질차적 요소	현실적 증재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현실적 증재지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편의성, 증거접근성 등 고려(11.20조2항)	* 실제 심리절차 진행
	증재인어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전체 증재과정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공식 증재언어를 규정 (11.20조3항)	
	투명성	(규정 없음)	투명성 조항 신설(29조) -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이의절차 미비	투명성 조항(11.21조) - 보호정보에 대한 증재판정부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신설(공동위원회에서 결정)	밀실재판에 대한 우려 불식위해 증재자료, 심리절차 등 공개
	비분쟁당사국 의 견제 출권	비분쟁당사국의 의견제출권 보장(1128조)	비분쟁당사국의 의견제출권 보장 (28.2조)	비분쟁당사국의 의견제출권 보장(11.20조4항) - 분쟁당사자 요청시 구두의견을 서면화	* 협정의 해석에 국한
	제3자 의 견제 출권	(규정 없음)	제3자(amicus curiae) 의견제출권 조항 신설(28.3조)	제3자(amicus curiae) 의견제출권 조항 (11.20조5항)	증재절차에 시민사회 등의 참여 보장
	본안진 항변	(규정 없음)	신속처리 규정 신설(28.4~6조)	신속처리 규정(11.20조7항) * 소송경제와 부당한 절차지연 방지	* 법률상의 문제에 대한 피 청구국의 이의제기 및 중 재판정부의 관할권 이의제기
	증재결정 사전검토	(규정 없음)	최종결정 전, 판정문 초안을 회람, 이에 대한 의견제출권(28.9조)	최종결정 전, 판정문 초안을 회람, 이에 대한 의견제출권(11.20조11항)	단심제의 단점 보완 (상소메커니즘 수립 전까지 적용)
	상소 메커니즘	(규정 없음)	항후 상소기구 수립에 관한 별도의 다자협정 발효시, 상소메커니즘의 적용위해 합의 노력(28.10조) - 협정발효 후 3년내 양자간 상소메커니즘 수립 고려 (부속서)	항후 상소기구 수립에 관한 별도의 다자협정 발효시, 상소메커니즘의 적용위해 합의 노력(11.20조12항) - 협정발효 후 3년내 양자간 상소메커니즘 수립 고려 (부속서11-2라)	* ICSD협약 취소 사유제(2조) ① 증재판정부의 부적절한 구성, ② 증재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③ 중재인의 부패, ④ 근본적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⑤ 이유불기재
	부속서의 해석	(규정 없음)	부속서의 해석(31조) - 피청구국의 조치의 유보 사항 여부에 대해 공동위원회에서 해석(증재판정부를 구속)	부속서의 해석(11.23조) - 피청구국이 항변으로 위반조치가 유보항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의 해석(증재판정부를 구속)	* 공동위원회는 요청 후 60일내 결정을 서면 제출 - 기한내 결정 없으면 증재판정부가 판단
	유보 예외 등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의 설립·인수에 대해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부과에 대한 권리 유보(부속서 제1차협정 제11조)	* 외국인투자촉진법 4조 등 반영 (우리나라에만 적용)

## 1 ISD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 (반대측 주장)

- ISD는 자본 수출국인 미국을 위한 제도라서 NAFTA에서 멕시코기업이 미국 정부를 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하나도 없음.
- 한-미처럼 사법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손해를 회복하면 충분함.
- ISD는 개인간의 계약불이행을 민사절차가 아닌 국제중재에 전가하며, 개인간 민사계약상의 불이행을 국가에게 전가시키게 됨.
- 지금까지 우리기업이 한번도 제소한 적이 없는 제도이므로 우리기업을 위한 제도라는 정부주장은 근거 없음.

- 우리나라는 1968년이래 2,675.8억불을 해외에 투자하고 1,789.5억불을 유치하여 해외투자가 외자 유입보다 더 활발하므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ISD가 필요
  - 특히,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대미투자(345.9억불)는 대한투자(99.4억불)의 3배 이상
- 우리 기업이 ISD를 이용한 실적이 없었으나, 추후 우리 투자자가 외국에서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활용 가능한 ISD제도를 유지할 필요
- ISD 제도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관련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중재를 희망하므로, 투자유치국 법원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중립적인 제3의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어 발전된 제도임.
  - ISD제도는 이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보다 원활한 투자자본의 흐름을 보장
- 국제분쟁해결절차가 결코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은 그간의 사례를 통해 확인 가능

-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ISD 제소한 108건 중 미국 기업은 15건 승소하였으며, 22건은 패소
- 중재위원 선임절차가 비슷한 WTO상 한-미 분쟁의 경우, 확정판결 사건 10건 중 우리의 제소건이 7건, 피소건이 3건인데, 한국이 7건을 승소(2배이상의 승률)

《 미국 관련 ISD 현황 》

- 미국 관련 ISD는 총 123건으로 미국 기업의 제소건은 108건, 미국 정부의 피제소건은 15건임(UNCTAD의 국제투자조약에 근거한 분쟁 기준, 2010년말 현재).
  - 미국 기업이 제소한 108건중 15건 승소, 22건 패소
  - 미국 정부 피제소 15건중 6건 승소

구분	국가 승소	투자자 승소	합의	계류중	기타	계
제소 (미국기업 → 외국정부)	22 (20.4%)	15 (13.9%)	18 (16.7%)	48 (44.4%)	5 (4.6%)	108
피제소 (외국기업 → 미국정부)	6 (40%)	-	-	9 (60%)	-	15

- ISD는 개인간의 계약불이행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투자유치국 정부(중앙 정부·주정부·지방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개인간 민사계약과는 무관)



## 2

## 국가의 공공정책 자율권이 훼손된다?

### (반대진영측 주장)

- ISD 도입으로 앞으로 정부는 공공정책을 펼 수 없게 됨.
  - 아무리 공공 영역이라 하더라도 일단 미국인 투자자들의 사업과 경쟁관계로 파악되는 순간, 미국 투자자들은 해당 공공사업을 위한 국가의 지원체계 자체를 문제 삼을 것임.
  - ISD 도입 자체가 사전 검열처럼 “된서리 효과(regulatory chill)”를 유발하는바, 국가의 정책 추진의 자율성이 제약 당함.

- 기본적으로 정부 조치가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경우에는 협정 위반이 아니므로, 정부의 ISD 피소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
- 특히, 한·미 FTA 협정상 ISD 제소 요건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한·미 FTA와 관련된 모든 조치(공공정책 포함)가 ISD 제소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님.
  - ISD 제기는 ① 투자유치국이 의무(협정상의 의무,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고, ②그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가능한바, 실제 발동 요건도 엄격히 제한(협정 제11.16조).
  - 우리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설정, 개별분야 정책권한 확보, 현재·미래 유보 등을 통해 우리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두었으므로, 이들 분야에서는 ISD 제소 근거가 없음 (☞ 제1편 IV항 참조)
  - 협정적용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부속서I(현재 유보)과 부속서II(미래유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조치는 협정상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ISD 제기 근거가 없음.
    - 우리 국내법규상 보건, 환경, 미풍양속 등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교육·에너지·운송·방송·환경 서비스 등 44개 분야)은 협정문에 유보로 처리된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 행사 가능

- 특히, ISD 제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님.
  
- 뒤서리효과로 공공정책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주장 관련, 공공정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ISD 제소 가능성이 낮으며, 합리적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ISD 제도로 인해 권한의 제약을 받지 않음.

### 3 중재 판정부는 중립적인가?

#### (반대측 주장)

- 중재 판정부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할 것임.
  -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하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총장이 의장 중재인을 임명
  - ICSID 중재인은 오로지 금융이나 상업 등에 관련된 법전문가일 것을 요구할 뿐으로, 초국적 기업측에 편향되어 있음
  - 국제중재기관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 변호사는 소수에 불과
  - 국제중재 판정의 결과는 예측 불가능

□ 한·미 FTA 협정은 제3의 의장중재인은 양 당사자 합의로 선정하되, 의장중재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ICSID 사무총장이 제3국인을 임명하도록 규정(제11.19조제3항)하여 중립성을 보장

□ 또한, 한·미FTA는 중재심리과정 및 각종 자료를 일반에 전면 공개하는 투명성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중재 판정의 신뢰성을 더욱 제고

※ 중재인은 절차개시전에 소정의 보수 이외에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보상도 받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분쟁당사자들과의 과거 및 현재의 각종 관계를 소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토록 강제하고(ICSID 중재절차규칙 제6조) 있으며, 중재인의 부패를 중재판정 취소사유로 하고 있음.

□ 제도적·경험적 관점에서 볼 때, 제3의 중재인을 워싱턴 D.C.에 소재한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하게 한다고 해서 중재판정부가 중립적이지 못하며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 제도라면 현재와 같이 147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절차로 자리 잡을 수 없었을 것임.

□ 실제로, NAFTA 사례 중 ICSID에서 중재판정부의 최종 결정이 있었던 사례 총 13건을 분석해 보면, 중재인 임명과 판정의 편파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할 수 있음.

- 제3의 중재인이 합의되지 않아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한 사례 총 4건중 미국측에 유리한 판정 결과 2건, 불리한 판정 결과 2건이었던 반면,
- 제3의 중재인을 분쟁당사자 양측이 합의하여 선정한 사례 총 9건 중, 미국측에 유리한 판정 결과 6건, 불리한 판정 결과 3건이었음.
-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제소한 108건 중 미국 기업 승소는 15건, 미국 기업 패소는 22건임.
- 2011년 6월 현재 ICSID 중재사건 중 중재인, 조정인 및 임시 위원회 회원 역임자의 국적별 현황(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음.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	멕시코	독일	호주	이탈리아
137	126	107	89	77	53	39	38	37	34

(자료: ICSID, The ICSID Caseload - Statistics, 2011)

- ICSID 협약상 각 회원국별로 동일하게 중재인 후보 4명, 조정인 후보 4명, 이렇게 모두 8명을 지명함(현재 총 526명이 등재).
- 역임자의 국적별 통계에서 미국인 수가 많은 것은 전체 ISD 사건 390건 중 미국(투자자 제소 또는 정부 피소)이 관여된 사건이 123건에 달하기 때문에 당사자(제소 투자자 또는 피소 정부)가 중재인 1명을 지명토록 하고 있는데 따른 당연한 현상임. 즉, 미국인이 ICSID 중재사건을 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주장임.
- 우리나라는 1967년 ICSID(1966년 발효, 147개국)에 가입한 이래 ISD 제소, 피소 건수는 없음.

## 4 사법주권이 훼손된다?

### (반대측 주장)

- 중재판정부 결정이 국내법 해석에 우월한 권한
- 한국의 검찰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 중재에 회부 가능

- 중재판정부 결정이 국내법 해석에 우월한 권한을 가지지 않음.
  -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 법원 제소시 한국 사법부가 한·미 FTA 조항을 해석하고 이를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
  - 미국인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관 제소시 국내법이 아닌 한·미 FTA 협정문을 기준으로 국제중재판정부가 판정을 하나, 양 당사국 정부가 문제된 협정 조문의 해석을 하게 되면 ISD의 중재판정부는 동 해석을 그대로 따라야함(협정문 제11.22조 제3항).
    - 이는 중재판정부가 양국이 협정 체결시 의도한 내용과 다른 취지로 협정문을 해석·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판정을 재심하게 되어 사법주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 관련 문제를 심리하게 되는 경우는, △ 적법절차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였는지(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부인, 정당한 변론권의 박탈 등 재판 절차를 명백히 부당하게 진행) 등을 그 대상으로 할 뿐임.
    - 예컨대, △ 국내 사법절차상 항소를 위해 필요한 보증증권 매입의 무가 과도하여 자국민과 외국 투자자를 차별하여 사실상 항소를 곤란하게 만든 경우(Loewen v. 미국, 1998), △ 사법부가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경우(Petrobart v. 키르키즈스탄, 2003) 등임.
  - 법해석 등에 관한 사법 판단 자체가 협정 위반으로 인정된 예는 파악된 바 없음.

## 5 투자자 제소시 중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나?

### (반대측 주장)

- 한·미 FTA에서 당사국은 투자자의 중재 청구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재량권이 전혀 없음.

- 사전동의조항은 투자협정의 핵심적 규정이며, 당사국 재량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중재절차가 시작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ISD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위배됨.
- ISD가 포함된 우리 FTA(6개) 전부와 한·중 투자보장협정 등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이러한 사전 동의조항(무조건적 동의조항 또는 동의 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분쟁해결절차 도입으로 제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나, 정부의 정당한 비차별적 정책 조치에 대한 예외 규정 등에 비추어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ISD에 회부하는 식의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 통상 중재에 소요되는 기간(2~3년)과 비용을 감안시, ISD 청구 제기가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과장된 주장

## 6

## 환경정책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반대진영측 주장)

- “메탈클래드 사건”에서 보듯이 정당한 환경정책이라도 국제 중재에 회부될 수 있음.

- 동 사건은 정부의 정당한 환경정책도 도전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되었던 투자자의 소유권이 부인되어 투자가치가 전면적으로 영구히 박탈되는 경우에는 간접수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 멕시코 정부는 지방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미국 투자자에게 쓰레기 매립장 영업에 필요한 모든 인가가 완비 또는 발급될 것이라고 보장했지만, 동 매립장 인수 및 처리시설 공사 후, 군 정부가 허가발급을 거부하여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미국 투자자는 여전히 동 쓰레기 매립장의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멕시코 정부의 조치로 동 매립장의 투자 가치가 전면적으로 박탈된 바, 중재재판부는 이를 간접 수용으로 판정함.
- 동 사건과 같이 정부조치가 명백히 자의적이고 부당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간접수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환경정책은 ISD 제소 우려 없음.
- 한·미 FTA는 NAFTA와 달리 환경정책 등 공공복지 목적 정책은 간접수용에 대한 예외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한·미 FTA하에 서는 환경정책의 입안·집행에 제약이 없을 것임.

**(반대진영측 주장)**

- 간접수용 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의 사법질서에 존재하지 않음.
- 부동산 정책 중 각종 지구 지정, 예를 들어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의 제한·규제는 투자자 국가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헌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보상을 투자자에게 하도록 강요
- 외국인 투자자를 내국인보다 더 우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법상으로 간접수용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헌법상 재산권의 제한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23조 제3항), 헌법재판소도 보상이 필요 없는 사회적 제약과 구별하여 보상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시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바 있음.

\* 헌법재판소 판례(97 헌바 26) : 10년이상 도시계획 미집행 상태로 환매권도 부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 “부동산 가격 안정화 규제 이외의 부동산 정책은 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한·미 FTA에 규정된 간접수용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으로 열거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안정화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예시이므로, 그 외의 분야도 공공복지 목적에 해당할 경우 간접수용이 아님(부속서 11-나 각주 19).
  -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에 제한·규제, 그린벨트 지정도 공공목적에 위하여 비차별적으로 집행되는 경우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음.
- 더군다나, 간접수용은 정부조치가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일 때 (extremely severe or disproportionate)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조치가 이에 해당되어 간접수용을 구성하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간접수용이 헌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보상을 투자자에게 하도록 강요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 한미 FTA에서는 우리측 요구에 따라 수용 및 보상조항을 통한 보상 범위에서 ‘재산권’만을 규정하고 ‘재산상 이익’은 배제시켜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범위와 조화를 이룸.
  -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기대이익, 반사적 이익, 경제적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2002 헌마 484)
  
- “미국인 투자자를 내국인보다 더 우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주장은 헌법상 평등권을 오해한 잘못된 주장임.
  - 우리 헌법 제11조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 ※ 헌법상 외국인은 우리 국민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위가 보장됨(헌법 제6조제2항).
  - 수용에 대한 보상은 국제법상 일반원칙이며,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를 내국인과 다르게 보호하는 것만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음.

**(반대측 주장)**

- BIT 보다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은 FTA에서의 ISD는 제소가능성이 높음.
  - 즉, BIT는 국내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허가된(설립후 투자)를 제소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한·미 FTA는 “설립전 투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 한·미 FTA에서 제소가 발생하여 패소할 경우 그 영향력은 FTA 특혜관세 중단이라는 관세보복도 야기할 수 있음.

□ FTA가 BIT보다 반드시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어 제소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음.

- ISD 제기는 협정상의 의무위반을 실체적 요건으로 하는데, FTA와 BIT간에는 이러한 협정상의 의무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수용 및 보상, 송금 보장, 이행요건 등) 투자자의 보호 범위가 “설립전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ISD 제기 대상이 넓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

※ “설립전 투자”는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적 투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며, 실제 투자를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함(즉, 투자를 시도 중인 (“attempt to make an investment”) 것을 지칭)

한편, 한·일 BIT에서처럼 BIT에서도 ‘설립전 투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어 BIT가 반드시 ‘설립후 투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님.

- 제소 가능성과 관련, 2010년말 현재 총 390건의 ISD 사례중 BIT상 ISD 제소는 303건(78%)이며, FTA에 근거한 ISD 사건은 51건(13%)에 불과
- 중재판정 불이행으로 무역보복을 하려면 국가간 분쟁절차 회부를 거쳐 FTA 협정위반이라는 패널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로 무역보복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뭄.

- 당사국의 중재재판부 판정 불이행으로 인한 중국적인 보복조치 규정은 한·칠레 등 우리의 기체결 FTA에서도 규정

《 전체 ISD 현황 》

○ 중재 패널 유형에 따른 현황(총 390건)

(2010년말 현재)

계	ICSID	UNCITRAL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SCC)	국제상공 회의소 (ICC)	임시중재	카이로 국제상사 중재센터	기타
390	245 (62.8%)	109 (27.9%)	19 (4.9%)	6 (1.5%)	4 (1.0%)	1 (0.3%)	6 (1.5%)

○ 판정 현황

계	종결 사건(197)			계류중	기타
	국가 승소	투자자 승소	합의		
390	78 (20.2%)	59 (15.1%)	60 (15.4%)	164 (42.1%)	29 (7.4%)

## 9

## 호주-미국 FTA에 ISD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 (반대측 주장)

- 호주-미국 FTA는 ISD를 제외

- 미국과 호주 양국은 대외적으로 양국간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하고 양국이 동일한 영미법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FTA에 ISD를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됨.
- 단, ISD 제외 댓가로 호주가 미국에 대한 투자 사전심사 기준액을 상향 조정(2억 호주불 → 10억 호주불)해 주는 등 큰 대가를 지불했던 것으로 파악
- 아울러 여전히 '상황변화시' ISD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도록 규정(미·호주 FTA 협정문 제11.16조).
- 미·호주 FTA 체결 당시(2004), 호주의 외국자본 유입이 호주의 해외투자보다 월등히 많았고, 미국의 대호투자가 호주의 대미투자를 상회하고 있어 호주로서는 ISD 도입 유인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 ※ 세계 → 호주: 1조1,519억 호주달러/ 호주 → 세계: 6,731억 호주달러
  - ※ 미국 → 호주: 3,623억 호주달러 / 호주 → 미국: 2,797억 호주달러
- 자원부국인 호주의 경우 외국인투자 중 자원개발관련 투자가 금액 기준 58%를 차지
- 또한, 2011.4월 신통상정책으로 인해 ISD 도입에 부정적인 자국의 입장 때문에 호주의 해외투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약화되는데 대한 우려도 호주국내에 있음.
- 호주는 현재 기체결 FTA 6개중 4개에 ISD를 포함하고 있으며, 23개국과 체결한 BIT 대부분이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UNCTAD DB, 2011.6.1 기준)

- ISD 포함 FTA: 싱가포르(2003), 태국(2005), 칠레(2009), 뉴질랜드 및 ASEAN(2010)
- ISD 미포함 FTA: 미국(2004), 뉴질랜드(1983)
- ISD 포함 BIT: 중국(1988), 베트남(1991), 파푸아뉴기니(1991), 폴란드(1992), 헝가리(1992), 홍콩(1993), 인도네시아(1993), 루마니아(1994), 체코(1994), 라오스(1995), 필리핀(1995), 아르헨티나(1997), 페루(1997), 파키스탄(1998), 칠레(1999), 인도(2000), 우루과이(2002), 이집트(2002), 스리랑카(2002), 리투아니아(2002), 멕시코(2007)

## 10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던데?

### (반대측 주장)

- 미국 내에서 조차 사법부, 정치권, 시민단체 반대

□ NAFTA에 ISD가 도입된 이후, 미국 정부의 피소 사례 증가로 미국내 일각에서는 ISD에 대한 비판 의견(당시 미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내국인 투자자를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 및 공공정책적 규제권의 위축 우려 등)이 대두된 바, 2004년 BIT 모델 문안을 개정하여, 관련 우려사항을 반영

### (실체적 측면)

- 최소대우 기준을 국제관습법적 기준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한편, 수용 관련 부속서를 채택하여 간접수용의 정의, 판단법리, 공공복지정책에 대한 예외 등을 명시

### (절차적 측면)

- 투명성 조항 도입(중재자료와 심리절차 공개), 제3자 의견제출권 보장, 남소 방지 규정(본안전 항변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 규정 등), 단심제의 단점 극복(최종판정 이전에 판정문 검토 절차, 협정발효후 상소메커니즘 수립 고려 등)

※ 반대측에서 주로 인용하는 비판론은 모두 2004년 미국 BIT 모델문안 도입 이전에 제기된 사항

□ 한·미 FTA는 미국의 2004년 BIT 모델 문안 수정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실체적, 절차적으로 우리 법·제도상의 법리를 포함하여 ISD 제도를 더욱 개선함.

- 간접수용 부속서 문안을 대폭 수용하여 우리 수용법제의 핵심개념인 '특별희생(special sacrifice)'의 법리 등을 규정하고,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을 추가하여 공공정책적 규제권을 강화

- 한국어·영어를 모두 공식 중재언어로 규정하고, 의장중재인의 제3국 요건을 명기하였으며, 투명성 규정·제3자 의견제출권·비분쟁 당사국 의견제출권 등을 규정
- 본안전 항변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 협정발효후 양국간에 적용될 상소 메커니즘 수립 고려 등도 포함

- 한·미FTA에서 투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FTA를 추진하는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와 외국인 투자 보호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FTA에서는 OECD, UN 등의 국제기구의 규범에 맞추어 기업 설립 등의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및 그 외에 지식재산권과 같은 모든 자산을 포함하는 폭넓은 투자의 정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그간 우리가 체결한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FTA에서 이러한 폭넓은 정의를 사용하였으며,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도 상기와 유사한 맥락에서 투자 범위를 논의하였음.
-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도 ISD 등 국제적인 투자분쟁 제도에 대해서 투자분쟁제도의 주권 잠식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1) 투자분쟁에 있어서는 수세기동안 외국인의 재산보호를 이유로 국제법을 적용해왔고, 2) 현재는 이러한 투자분쟁제도가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간의 이익 조절 기능을 담당,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유익함이 입증되었으며, 3)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투자활성화와 투자안정화 시스템으로 순기능을 행사하고 있음.
  - ISD는 기본적인 투자진흥책의 하나로 그동안 국가들에 대한 청구액은 23억불을 상회 하였으나, 실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2300만불에 그쳤음.
- ISD 조항의 경우 환경, 조세, 부동산 정책 등의 공공정책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예가 되고, 이미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경제협정에 ISD가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향후 중국, 기타 국가들과의 협정 속에 정당한 ISD규정의 삽입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중국 내에 2만여개 우리 기업이 320억불을 투자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협상에서도 동 제도의 포함을 강력히 요구

□ 또한 **ISD**는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도 기여 할 것임.

1. 투자보장협정(BIT) 발효 현황(85개국)

- \* ISD제도는 전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되어있으며, 우리가 체결하여 이미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 중인 모든 FTA(7개 중 한·EU FTA를 제외한 6개)와 85개 투자보장협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내용
- 우리나라가 체결, 발효중인 **85개** 투자보장협정 중 ISD조항이 없는 협정은 4개에 불과

(2011.8 현재)

	발 효(85)	ISD 불포함 국가(4개국)	비 고
구주 지역 (32 개국)	독일('67), 영국('76), 프랑스('79), 덴마크('88), 헝가리('89), 폴란드('90), 러시아('91), 오스트리아('91), 이탈리아('92), 우즈베키스탄('92), 리투아니아('93), 터키('94), 스페인('94), 체코('95), 그리스('95), 타지키스탄('95), 핀란드('96), 포르투갈('96), 카자흐스탄('96), 라트비아('97), 우크라이나('97), 스웨덴('97), 벨라루스('97), 네덜란드('05), 슬로바키아('06), 알바니아('06), 크로아티아('06), 불가리아('06), 아제르바이잔('08), 루마니아('08), 키르기즈('08), 벨·룩셈부르크('11)	독일 프랑스	▶ 개정된 협정 - 네덜란드('75), 벨.룩셈부르크('76), 루마니아('94)  ▶ 한.EFTA FTA('06)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는 투자보장 제외)
아시아 지역 (16 개국)	스리랑카('80), 방글라데시('88), 말레이시아('89), 태국('89), 파키스탄('90), 몽골('91), 인도네시아('94), 인도('96), 라오스('96), 필리핀('96), 캄보디아('97), 홍콩('97), 일본('03), 브루나이('03), 베트남('04), 중국('07)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 개정된 협정 - 베트남('93), 중국('92) ▶ 한-싱가폴 FTA('06)
아프리카-중동 지역 (22 개국)	이집트('97), 카타르('99), 사우디아라비아('03), 이스라엘('03), 오만('04), 아랍에미리트('04), 요르단('04), 이란('06), 레바논('06), 쿠웨이트('07), 튀니지('75), 세네갈('85), 남아공('97), 나이지리아('99), 모로코('01), 알제리('01), 모리타니아('06), 리비아('07) 모리셔스('08), 가봉('09), 부르키나파소('10), 콩고공화국('11)		▶ 개정된 협정 - 이란('98)
미주 지역 (15 개국)	파라과이('93), 페루('94), 아르헨티나('96), 볼리비아('97), 니카라과('01), 온두라스('01), 파나마('02), 엘살바도르('02), 멕시코('02), 과테말라('02), 코스타리카('02), 트리니다드토바고('03), 가이아나('06), 자메이카('07), 도미니카('08)	※ 한-미간 투자보장에 관한 각서교환('60), 양국간 투자촉진 협정('98) 상에는 ISD 조항이 없음.	▶ 한·칠레 FTA ('04) ▶ 한·미 FTA ('07.6월 서명)

## 2. 한국과 EU 국가간 체결한 BIT

연번	국가	발효일	ISD 조항 포함 여부
1	네덜란드	1975.6.1 (2005.3.1 개정본 발효)	포함
2	영국	1976.3.4	
3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1976.9.3 (2011.3.27 개정본 발효)	
4	덴마크	1988.6.2	
5	헝가리	1989.1.1	
6	폴란드	1990.2.2	
7	오스트리아	1991.11.1	
8	이탈리아	1992.6.26	
9	리투아니아	1993.11.9	
10	스페인	1994.7.19	
11	루마니아	1994.12.30 (2008.1.11. 개정본 발효)	
12	체코	1995.3.16	
13	그리스	1995.11.4	
14	핀란드	1996.5.11	
15	포르투갈	1996.8.12	
16	라트비아	1997.1.26	
17	스웨덴	1997.6.18	
18	슬로바키아	2006.2.7	
19	불가리아	2006.11.16	
20	독일	1967.1.15	불포함
21	프랑스	1979.2.1	

※ 27개 EU회원국 중 22개국과 BIT체결, 20개국과 ISD적용

## 참고 7

## 기체결 FTA의 ISD 포함 현황

구분	상대국	ISD 조항 포함 여부	관련 조항
발효 (7건)	칠레 (‘04.4월 발효)	○	제10장 제3절
	싱가포르 (‘06.3월 발효)	○	제10장 제3절
	EFTA (‘06.9월 발효)	○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 국·스위스연방 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 제16조
	ASEAN (상품 ‘07.6월, 서비스 ‘09.5월, 투자 ‘09.9월 발효)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제18조
	인도 (‘10.1월 발효)	○	제10장 제3절
	EU (‘11.7.1 잠정발효)	X	- *개별회원국과의 BIT에 ISD 포함
	페루 (‘11.8.1 발효)	○	제9장 제2절
타결 (1건)	미국 (07.6월 협정 서명)	○	제11장 제2절

## 제3편 서비스·투자/중소기업분야 서한교환

- I. 추진 배경 및 경위
- II. 서한교환 주요 내용
- III. 의의 및 향후 계획 (안)



## I 추진 배경 및 경위

- 6.3 우리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미 FTA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분야 및 서비스·투자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
- 정부는 중소기업 분야 및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국내적 논의 동향을 고려, 미측과 협의를 진행한 바, 미측은 협정내용의 수정을 수반하는 논의에 난색 표명
- 양측은 협정 발효후 중소기업 분야 및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제기사항을 양국간에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작업반” 및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
  - 10.30(일) 한·미 통상장관간 서한 교환 형식으로 합의

## II 서한 교환 주요 내용

### 1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 한미 양국은 한·미 FTA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에 합의
  -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서비스·투자 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이중 장치를 통해 보다 신중한 협정 이행 도모
    - ※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협정상 설치규정이 이미 존재(한·미 FTA 부속서 13-다)
-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아래 기능을 수행
  - ① 협정 제11장(투자),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제14장(통신)의 이행과 집행을 점검·감독

- ②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개선 방안을 모색·개발
- ③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기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룸
- ④ 동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안을 검토

□ 동 위원회는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제1차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개최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수시 회의도 개최 가능)

## 2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 한미 양국은 '중소기업 작업반'을 설치, 첫 회의 개최 후 1년 내에 활동 결과를 권고(recommendations)와 함께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 보고

□ 중소기업 작업반은 아래 기능을 수행

- ① 협정 이행이 중소기업의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 ② 협정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이득을 중소기업이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개발
- ③ 협정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룸.

④ 그 밖에 작업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 관련 사안을 검토

□ 동 작업반은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제1차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개최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수시 회의도 개최 가능)



## II 의의 및 향후 계획(안)

### 1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 미국의 기체결 FTA(14개)중 서비스·투자 분야 논의를 위해 별도 위원회가 설치되는 협정은 한·미 FTA가 유일

- 포괄적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에 추가하여,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실무적 협의 메커니즘 설치 (발효후 90일내 첫 회의 소집)

☞ 서비스·투자 분야 이행상의 문제점 해소 모색

- 서비스·투자 분야의 이행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 (결과 지향적인 구체적인 활동 수행)
- 동 위원회를 통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 협의
  - ※ 서비스·투자 협정 이행 관련, 어느 한 쪽이 제기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논의하는 것은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중 하나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해 미 행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 요청

☞ 미국내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채널로 활용

- 꾸준히 증가추세인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현지 투자활동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 활용

### 2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중 최초로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 한·미 FTA 이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협의 채널 설치

- 국내 생산의 50%,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한·미 FTA의 영향 평가와 이에 기초한 대처방안 협의통로 마련

※ 우리 중소기업의 경제비중 (상세 별첨)

- 사업체수 99.9%, 고용 87.7%, 제조업 생산 50.5%, 수출 33%

- FTA 활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FTA 혜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협의

※ 6.23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총 14개 단체)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발효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

- 우리 중소기업의 협정 활용과정에 겪는 애로사항들을 조사하여, 중소기업 작업반에서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 추진

### ☞ 중소기업 관련 국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작업반에서 논의·해결 모색

- 우리 중소기업 관련 국내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특히, 국내에서 우려가 높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도 중소기업 작업반의 논의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의 범위는 각자 국내 법령과 기준에 따르기로 각주에서 규정 (별첨)

- 양국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협의채널로 활용

### ☞ 공동위원회에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결과지향적인 활동 모색

- 동 작업반은 첫 회의(발효후 90일내) 개최 후 1년 내에 작업반 활동결과와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보고

- 작업반 활동결과 보고서와 중소기업 관련 권고(recommendations)의 작성과정에 우리측 관심사항과 제기사항을 반영하여, 협정 이행과정에 우리 중소기업의 이익 증진 도모

- 동 작업반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결과 지향적인 활동 모색



**1. 서한(우리측 제안 및 미측 회답) 한글본 및 영어본**

**2. 서한 개요 요약표**

**3. 한·미간 서비스·투자 교역 현황**



< 비공식 번역 한글본 : 우리측 제안 >

론 커크

2011년 10월 30일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커크 대사 귀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당사국들”)간의 전반적인 경제관계에서 서비스 무역과 투자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시에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 우리 각 정부 대표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의 감독을 도와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다.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1)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1장, 제12장 및 제14장의 이행과 집행을 점검·감독하고, (2)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들 분야에서 이행되는 방식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하고, (3) 이들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루고, (4) 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기구 및 작업반과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의해 감독될 것이며, 그 밖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째 회

의를 개최할 것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년 회합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랍니다.

김 중 훈

< 비공식 번역 한글본 : 미측 회신 >

김종훈

2011년 10월 30일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당사국들”)간의 전반적인 경제관계에서 서비스 무역과 투자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시에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 우리 각 정부 대표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의 감독을 도와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다.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1)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1장, 제12장 및 제14장의 이행과 집행을 점검·감독하고, (2)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들 분야에서 이행되는 방식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하고, (3) 이들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루고, (4) 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기구 및 작업반과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의해 감독될 것이며, 그 밖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 22.2조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

제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년 회합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서한이 우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론 커크



< 영어본 : 우리측 제안 >



MINISTER FOR TRAD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EOUL, KOREA

October 30, 2011

The Honorable Ron Kirk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ashington, D.C.

Dear Ambassador Kirk,

Given the importance of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in the overall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Parties"), it is in the mutual interest of both of our countries to establish a Committee on Services and Investment upon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This Committee, which will comprise representatives of our respective Governments, will provide an important mechanism to help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US in the services and investment areas.

The Committee on Services and Investment will: (1) monitor and oversee the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KORUS Chapters 11, 12, and 14 in the areas of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2) explore and develop ways to further improve the manner in which the KORUS is implemented in these areas; (3) address any specific issues raised by either Party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US in these areas; and (4) consider any other matter as the Committee deems appropriate. As with other committees, bodies, and working groups established under the KORUS, the Committee will be supervised by the Joint Committee and otherwise be subject to applicable provisions set out in the KORUS Article 22.2.

The Committee will hold its first meeting within 90 days of entry into force of the KORUS and meet on an annual basis thereafter, unless both Parties agree otherwise.

I have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Governments.

Sincere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Jong-Hoon Kim', written over a horizontal line.

Jong-Hoon Kim

< 영어본 : 미측 회신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ASHINGTON, D.C. 20508

OCT 30 2011

The Honorable Jong-Hoon Kim  
Minister for Trade  
Seoul, Republic of Korea

Dear Minister Kim,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of this date, which reads as follows:

Given the importance of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in the overall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Parties"), it is in the mutual interest of both of our countries to establish a Committee on Services and Investment upon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This Committee, which will comprise representatives of our respective Governments, will provide an important mechanism to help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US in the services and investment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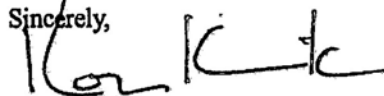
The Committee on Services and Investment will: (1) monitor and oversee the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KORUS Chapters 11, 12, and 14 in the areas of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2) explore and develop ways to further improve the manner in which the KORUS is implemented in these areas; (3) address any specific issues raised by either Party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US in these areas; and (4) consider any other matter as the Committee deems appropriate. As with other committees, bodies, and working groups established under the KORUS, the Committee will be supervised by the Joint Committee and otherwise be subject to applicable provisions set out in the KORUS Article 22.2.

The Committee will hold its first meeting within 90 days of entry into force of the KORUS and meet on an annual basis thereafter, unless both Parties agree otherwise.

I have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Governments.

I have the further honor to confirm that my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and that your letter and this letter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Sincerely,



Ambassador Ron Kirk

## 2

## 서한 개요 요약표

구 분	내 용
합의 형식	- 서한교환
합의 내용	- 서비스·투자 위원회(Committee on Services and Investment) 설치
회의 개최	- 1차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 개최 - 이후 매년 개최 -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수시 개최도 가능
운영 방식	- 한·미 FTA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의해 감독 - 한·미 FTA 제22.2조의 규정 적용
작업반 구성	- 양국 정부 공무원
작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한·미 FTA 제11장, 제12장 및 제14장의 이행과 집행을 점검·감독</li> <li>② 한·미 FTA가 이들 분야에서 이행되는 방식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li> <li>③ 이 들 분야에서 한·미 FTA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룸.</li> <li>④ 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li> </ul>

### 3

## 한·미간 서비스·투자 교역 현황

### 1. 한·미 서비스 교역 현황

(단위: 억불, %)

구 분	00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 교역액	213.8	286.2	334.3	390.8	386.3	340.8
전체 교역에서 서비스 비중	25%	29%	31%	32%	32%	34%

\* 출처: 한국은행

### 2. 한·미 투자 현황

□ 금년 6월 이후 우리의 대미 투자 규모가 대미 투자유치 규모를 상회 (누적 기준, 미→한 449억불, 한→미 534억불)

(단위: 억불, %)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6	누계
미 → 한 (비중)	38.8 (34.4)	26.9 (23.3)	17.0 (15.2)	23.4 (22.3)	13.3 (11.3)	14.9 (12.9)	19.7 (15.1)	11.1 (20.7)	448.9 (25.1)
한 → 미 (비중)	19.2 (29.4)	14.4 (14.7)	21.8 (11.3)	44.2 (14.7)	62.4 (20.0)	39.4 (12.7)	50.5 (14.4)	125.8 (46.8)	533.8 (19.9)

※ 대한국투자자는 1962~2011.6월간, 대미국투자 누계기간은 1968~2011.6월간

\* 출처: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비중은 전세계 규모 대비(신고기준)

### 3. 한국의 업종별 대미투자 (2010 누계)

(단위: 억불, %)

업 종	제조	도소매	농·임업·어업·광업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	통신	숙박 음식점	건설	운수	여가관련 서비스
금 액	113.3	107.3	39.6	39.1	26.2	20.0	10.2	7.1	6.4	4.31
비 중	27.5	26.0	9.6	9.5	6.4	4.9	2.5	1.7	1.6	1.0

\* 출처: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비중 : 대미투자 2010 총 누계금액(412억불) 대비

### 4. 미국의 업종별 대한투자 (2010 누계)

(단위: 억불, %)

업 종	서비스	제조업	전기·가스·수도·건설	농·축·수산·광업
금 액	268.8	132.9	35.5	0.7
비 중	61.4	30.3	8.1	0.2

\* 출처: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1. 서한(우리측 제안 및 미측 회답) 한글본 및 영어본**

**2. 서한 개요 요약표**

**3.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

**4. 중소기업의 경제비중**



## &lt; 비공식 번역 한글본 : 우리측 제안 &gt;

론 커크

2011년 10월 30일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커크 대사 귀하,

“중·소규모 기업”(중소기업)이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혁신을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우리 양국 경제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단계에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은 우리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당사국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시에 우리 각 정부 대표로 구성된 중소기업 작업반을 설치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1)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중소기업<sup>1)</sup>에 의한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2) 중소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의 이득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하고, (3)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루고, (4) 이 작업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기구 및 작업반과 마찬가지로, 이 작업반은 공동위원회에 의해 감독

1) 이 작업반의 목적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관련 국내 법, 규정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상에 그렇게 정의되거나 취급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체를 포함한다.

될 것이며 그 밖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작업반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년 회합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그 첫 번째 회의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권고와 함께 그 작업반의 활동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중 훈



< 비공식 번역 한글본 : 미측 회신 >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2011년 10월 30일

김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중·소규모 기업”(중소기업)이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혁신을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우리 양국 경제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단계에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은 우리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당사국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시에 우리 각 정부 대표로 구성된 중소기업 작업반을 설치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1)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중소기업<sup>1)</sup>에 의한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2) 중소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의 이득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하고, (3)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루고, (4) 이 작업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기구 및 작업반과

1) 이 작업반의 목적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관련 국내 법, 규정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상에 그렇게 정의되거나 취급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체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이 작업반은 공동위원회에 의해 감독될 것이며 그 밖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작업반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년 회합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그 첫 번째 회의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권고와 함께 그 작업반의 활동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서한이 우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론 커크

< 영어본 : 우리측 제안 >



MINISTER FOR TRAD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EOUL, KOREA

October 30, 2011.

The Honorable Ron Kirk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ashington, D.C.

Dear Ambassador Kirk,

Given the important rol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play in both of our economies in terms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job creation and innovation, it is in the mutual interest of both of our countries to work together to more effectively address the issues affecting SMEs in the implementation phas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To that e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Parties”) will establish a Working Group on SMEs upon entry into force of the KORUS, comprising representatives of our respective Governments.

The Working Group will: (1) analyze and evaluate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US o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trade by SMEs<sup>1</sup>; (2) explore and develop ways for SMEs to take greater advantage of the economic opportunities created by the KORUS; (3) address any specific issues affecting SMEs relating to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raised by either Party; and (4) consider any other matter pertaining to SMEs as the Working Group deems appropriate. As with other committees, bodies, and working groups established under the KORUS, the Working Group will be supervised by the Joint Committee and otherwise be subject to applicable provisions set out in the KORUS Article 22.2.

The Working Group will hold its first meeting within 90 days of entry into force of the KORUS and meet on an annual basis thereafter, unless both Parties agree otherwise. Within one year of its first meeting, the Working Group will present the outcome of its work with recommendations, as appropriate, to the Joint Committee for its consideration.

I have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Governments.

Sincere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Jong-Hoon Kim', written over a horizontal line.

Jong-Hoon Kim

---

<sup>1</sup> For purposes of the Working Group, SMEs include any type of business that is defined or treated as such under the relevant domestic laws, regulations or government-established criteria of either Party.

< 영어본 : 미측 회신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ASHINGTON, D.C. 20508

OCT 30 2011

The Honorable Jong-Hoon Kim  
Minister for Trade  
Seoul, Republic of Korea

Dear Minister Kim,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of this date, which reads as follows:

Given the important rol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play in both of our economies in terms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job creation and innovation, it is in the mutual interest of both of our countries to work together to more effectively address the issues affecting SMEs in the implementation phas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To that e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Parties”) will establish a Working Group on SMEs upon entry into force of the KORUS, comprising representatives of our respective Governments.

The Working Group will: (1) analyze and evaluate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US o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trade by SMEs<sup>1</sup>; (2) explore and develop ways for SMEs to take greater advantage of the economic opportunities created by the KORUS; (3) address any specific issues affecting SMEs relating to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raised by either Party; and (4) consider any other matter pertaining to SMEs as the Working Group deems appropriate. As with other committees, bodies, and working groups established under the KORUS, the Working Group will be supervised by the Joint Committee and otherwise be subject to applicable provisions set out in the KORUS Article 22.2.

The Working Group will hold its first meeting within 90 days of entry into force of the KORUS and meet on an annual basis thereafter, unless both Parties agree otherwise. Within one year of its first meeting, the Working Group will present the outcome of its work with recommendations, as appropriate, to the Joint Committee for its consideration.

I have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Governments.

---

<sup>1</sup> For purposes of the Working Group, SMEs include any type of business that is defined or treated as such under the relevant domestic laws, regulations or government-established criteria of either Party.

I have the further honor to confirm that my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and that your letter and this letter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Sincerely,



Ambassador Ron Kirk

구 분	내 용
합의 형식	- 서한교환
합의 내용	- 중소기업 작업반(Working Group on SMEs) 설치
회의 개최	- 1차 회의는 협정발효 후 90일 이내 개최 - 이후 매년 개최 -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수시 개최도 가능
운영 방식	- 한·미 FTA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의해 감독 - 한·미 FTA 제22.2조의 규정 적용
작업반 구성	- 양국 정부 공무원
작업 내용	① 한·미 FTA의 이행이 중소기업에 의한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② 한·미 FTA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의 이득을 중소기업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 ③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룸. ④ 이 작업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그 밖의 사안을 검토
향후 작업계획	- 1차 회의로부터 1년 이내에, 작업반의 활동 결과를 권고와 함께 공동위원회에 제출
중소기업의 범위 (각주 내용)	- 중소기업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관련 법, 규정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상에 그렇게 정의되거나 취급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체를 포함

해당업종	한 국	미 국
제조업	○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500인 이하(전체 업종의 75%) - 섬유, 화학, 금속, 운송기기제작 등 일부 업종은 750~1,000인 이하
광업	○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500인 이하
도매업	○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100인 이하
소매업	○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대부분 매출액 7백만불 이하 - super markets and grocery stores : 30백만불
건설업	○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매출액 33.5백만불 이하 - 철근, 골재, 석재 등 일부 업종은 14백만불
운수업	○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승객운수: 매출액 7백만불 이하 - 트럭운수: 매출액 25.5백만불 - 항공·철도 운수: 1,500인, 해상운수: 500인
농업, 임업 및 어업	○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농업(축산업 포함) : 매출액 0.75백만불 이하 - 임업 : 매출액 7백만불 - 어업 : 매출액 4백만불
서비스업	○ 50~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300억원 이하 (업종에 따라 상이)	○ 대부분 매출액 7백만불 이하 (업종에 따라 상이)

#### 〈자료 출처〉

- 한국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준
- 미국 : 연방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지원가능한 중소기업 기준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10.11월)

## 4

## 중소기업의 경제 비중 (2011.5월,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 □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09)

(단위 : 개, %)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중
사업체수	3,069,400	2,916	3,066,484 (2,685,856)	99.9
종사자수	13,398,497	1,647,475	11,751,022 (5,217,922)	87.7

## ○ 제조업(종사자 5인이상) (2009)

(단위 : 개, 명, 억원, %)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중
사업체수	111,722	596	111,126	99.5
종사자수	2,798,297	647,846	2,150,451	76.8
생산액	11,678,402	6,119,855	5,558,547	47.6
부가가치	3,926,600	1,944,638	1,944,638	50.5

## ○ 서비스 (2005)

(단위 : 개, 명, 억원, %)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중
사업체수	2,112,535	3,246	2,109,289 (1,860,210)	99.8
종사자수	6,904,504	628,258	6,276,246 (3,445,142)	90.9
매출액	7,837,007	1,635,125	6,201,882 (1,908,845)	79.1
부가가치	2,252,189	409,199	1,842,991 (720,227)	81.8

## □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비중

(단위 : 억불, %)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1,042	32.0%	1,136	30.6%	1,305	30.9%	1,173	32.3%	1,539	33.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제4편 한·미 주요 통계

- I. 한·미 주요 경제 통계
- II. 한·미간 교역통계
- III. 주요국과의 교역통계



# 한·미 주요 경제통계

## 1 한·미 주요 경제지표 비교

구 분		년 도	한 국	미 국	비 고
국내총생산 (명목GDP, 억불)		2009	8,325	142,563	한국의 17배 미국(1위), 한국(15위)
1인당GDP (PPP기준, 불)			27,978	46,381	한국의 1.7배 미국(6위), 한국(31위)
경제성장률 (실질, %)			(2009) 0.2 (2010) 6.1 <sup>P</sup>	(2009) △2.6 (2010) 2.6 <sup>P</sup>	
인 구		2010	4,850만명	3.2억명	한국의 6.5배 미국(3위), 한국(26위) ☆ 전세계 인구: 69억명
국토면적(천ha)		2009	9,972	982,668	한국의 98.5배 미국(3위), 한국(108위) ☆ 전세계 평균: 53,853.6
상 품 교 역 (십억불)	총액	2009	687	2,661	한국의 3.9배 미국(1위), 한국(10위)
	수출		364	1,056	중국(1위), 미국(3위), 한국(9위)
	수입		323	1,604	미국(1위), 한국(12위)
	수지		41	△549	
서비스 교 역 (십억불)	총액		132	805	한국의 6.1배 미국(1위), 한국(14위)
	수출		57	474	미국(1위), 한국(19위)
	수입		75	331	미국(1위), 한국(14위)
	수지		△18	139	

\* 출처: 한국무역협회 『세계속의 대한민국 2010』, WTO 『World Trade Statistics 2010』

\*\* P는 잠정치

## 2

##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명목GDP(억불)	9,511	10,493	9,310	8,329	-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비, %)	5.2	5.1	2.3	0.2	6.1 (잠정)
무역	상품수출(억불)	3,365	3,896	4,347	3,582	4,643
	상품수입(억불)	3,051	3,524	4,295	3,203	4,224
	상품수지(억불)	314	371	52	379	419
경상수지(억불)		141	218	32	328	282
외환보유액(억불) (가용외환 보유액 기준)		2,390	2,622	2,012	2,700	2,916
환율(원/달러, 기간평균)		996	929	1,103	1,276	1,156
금리 (%)	콜금리(1일)	4.19	4.77	4.78	1.98	2.16
	회사채 유통수익율(3년)	5.17	5.70	7.02	5.81	4.66
물가 (증가율, )	생산자	0.9	1.4	8.6	△0.2	3.8
	소비자	2.2	2.5	4.7	2.8	2.9
실업률(% , 계절조정)		3.5	3.2	3.2	3.6	3.7
산업 생산 <sup>1)</sup> (%)	전산업	8.4	6.9	3.4	△0.1	16.2
	제조업	8.7	7.1	3.4	△0.2	16.7
	제조업 가동율	80.1	80.3	77.6	74.4	81.2
주가지수 (KOSPI 평균지수)		1,352	1,712	1,529	1,429	1,765

\* 주 : 증가율:전년대비, 1) 산업 생산 지수(2005=100) 증감율

\* 출처 : 기획재정부 주요경제지표, 통계청, World Bank

## 한국의 GDP 및 분야별 비중(2010)

(단위:조원, %)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농림어업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GDP	1,173	27	323	2	21	69	615
비중	100	2.3	27.5	0.2	1.8	5.9	52.4

\* 출처 : 한국은행, 원계열, 명목

\*\* 통계기법상의 이유로 총량과 그 구성요소간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 3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명목GDP(억불)	133,989	140,618	143,691	141,191	146,242 <sup>P</sup>
	실질GDP(억불) (증가율, %)	129,762 (2.7)	132,289 (1.9)	132,289 (0.0)	128,806 (△2.6)	135,262 <sup>P</sup> (2.6)
무역 <sup>1)</sup>	상품수출(억불) (증가율, %)	10,158 (13.8)	11,384 (12.1)	12,770 (12.2)	10,465 (△18.1)	12,891 (20.6)
	상품수입(억불) (증가율, %)	18,631 (10.7)	19,694 (5.7)	21,172 (7.5)	15,625 (△26.2)	19,356 (22.9)
	상품수지	△8,822	△8,310	△8,402	△5,160	△6,465
경상수지(십억불)		△804	△727	△706	△420	-
금리 (%)	Federal Fund Rate	5.25	4.25	0.25	0.25	0.25
	장기국채수익률 <sup>2)</sup>	4.79	4.63	3.67	3.26	3.21
물가 <sup>3)</sup> (증가율, %)	생산자	3.0	3.9	6.3	△2.5	4.2
	소비자	3.3	2.9	3.8	△0.4	1.6
실업률(%)		4.6	4.6	5.8	9.3	9.6
노동생산성 <sup>4)</sup> (%)		0.9	1.9	1.8	3.0	3.5
산업 생산 <sup>5)</sup> (%)	전산업	2.3	1.5	△2.2	△9.7	5.9
	제조업	2.5	1.4	△3.2	△11.4	5.8
	제조업 가동율	79.4	79.0	75.1	66.9	69.1
추가지수 <sup>6)</sup>		12,463	13,265	8,776	10,428	11,678

주 : 증가율: 전년 대비 1) 국제수지(BOP) 기준 2) 30년 만기 (2002.3월 이후는 10년 만기) 3) 생산자물가는 최종재 기준 4) 전산업(농업부문 제외) 취업자의 단위시간당 불변산출액 기준 (1992=100) 5) 지수(1992=100) 증감율 6) 다우존스 공업평균주가, 기말기준, P는 잠정치

\* 출처 : 미상무부, 노동부, Federal Reserve Bulletin, International Financial Status (IMF), World Bank

## 1 우리나라의 주요 상품교역 현황

(단위 : 억불)

순 위	2008					2009					2010				
	국가	총교역액 (비중)	수출	수입	수지	국가	총교역액 (비중)	수출	수입	수지	국가	총교역액 (비중)	수출	수입	수지
	(전체)	8,573 (100%)	4,220	4,353	-133	(전체)	6,866 (100%)	3,635	3,231	404	(전체)	8,916 (100%)	4,664	4,252	412
1	중국	1,683 (19.6%)	914	769	145	중국	1,409 (20.5%)	867	542	325	중국	1,884 (21.1%)	1,169	716	453
2	GCC	1,006 (11.7%)	150	855	-705	EU	788 (11.5%)	466	322	144	ASEAN (싱가 포르 포함)	973 (10.9%)	532	441	91
3	EU	984 (11.5%)	584	400	184	ASEAN (싱가 포르 포함)	750 (10.9%)	410	341	69	일본	925 (10.4%)	282	643	-361
4	ASEAN (싱가포 르포함)	902 (10.5%)	493	409	84	일본	712 (10.4%)	218	494	-277	EU	922 (10.3%)	535	387	148
5	일본	892 (10.4%)	283	610	-327	미국	<b>667 (9.7%)</b>	<b>377</b>	<b>290</b>	<b>87</b>	미국	<b>902 (10.1%)</b>	<b>498</b>	<b>404</b>	<b>94</b>
6	미국	<b>847 (9.9%)</b>	<b>464</b>	<b>384</b>	<b>80</b>	GCC	616 (9.0%)	117	499	-382	GCC	789 (8.9%)	125	664	-539
7	호주	232 (2.7%)	52	180	-128	홍콩	211 (3.1%)	197	15	182	대만	285 (3.2%)	148	136	12
8	대만	221 (2.6%)	115	106	9	호주	200 (2.9%)	52	148	-96	홍콩	272 (3.1%)	253	19	234
9	홍콩	220 (2.6%)	198	22	175	대만	194 (2.8%)	95	99	-4	호주	271 (3.0%)	66	205	-138
10	러시아	181 (2.1%)	97	83	14	인도	122 (1.8%)	80	41	39	러시아	177 (2.0%)	78	99	-21

\*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교역액 순위순

## 가. 한·미간 서비스 교역 현황

(단위 : 억불)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교역액	286.24	334.27	390.81	386.28	340.77
대미수출	120.14	131.55	163.97	148.94	122.92
대미수입	166.10	202.72	226.84	237.34	217.85
서비스수지	-45.96	-71.17	-62.87	-88.40	-94.93

\* 출처 : 한국은행

\*\*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서비스교역 흑자규모(2009: 43억불, 2010: 51억불)가 한국은행 통계와 상이

## 나. 한·미간 투자 통계 현황

## (1) 우리나라의 대세계 투자 현황(2011.6월 누계)

(단위: 억불,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누 계
한국 → 해외	65.1	67.1	65.6	92.5	97.7	195.8	304.3	370.6	305.8	335.5	269.0	2,675.8
해외 → 한국	112.9	91.0	64.7	128.0	115.7	112.5	105.2	117.1	114.8	130.7	53.7	1,789.5

\* 출처: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신고금액기준), 누계 : 1968~2011.6월말까지

※ 우리의 해외투자 현황(2010 누계): 총 2,444억불, ①중국 (458억불), ②미국 (412억불), ③홍콩 (132억불), ④베트남 (130억불), ⑤영국 (91억불), ⑥인도네시아 (85억불) 순

## (2) 한·미 투자 현황(2011.6월 누계)

□ 양국간 투자규모는 상호 대등한 수준 (미→한 448.9억불, 한→미 533.8억불)

- 2006년 對미 투자액이 對한국 투자액을 넘어선 이후, 동 추세가 지속  
(2006~2011.6월 : 미→한 99.4억불, 한→미 345.9억불)

(단위 : 억불, 신고기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총누계*
미 → 한 (비중)	38.8 (34.4)	44.9 (46.4)	12.4 (19.2)	47.2 (36.9)	26.9 (23.3)	17.1 (15.2)	23.3 (22.1)	13.3 (11.3)	14.9 (12.9)	19.7 (15.1)	11.1 (20.7)	448.9 (25.1)
한 → 미 (비중)	19.2 (29.4)	14.7 (22.0)	0.8 (12.1)	14.8 (16.0)	14.4 (14.7)	22.1 (11.3)	44.4 (14.6)	62.7 (16.9)	39.8 (13.0)	51.1 (15.2)	125.8 (46.8)	533.8 (19.9)

\* 출처: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비중은 전세계 규모 대비

### (3) 우리나라의 업종별 대미투자(2010 누계)

(단위: 억불, %)

업종	농·임업·어업·광업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통신	금융보험	숙박 음식점	여가관련 서비스	부동산 임대
금액	39.6	113.3	7.1	107.3	6.4	20.0	39.1	10.2	4.31	26.2
비중	9.6	27.5	1.7	26.0	1.6	4.9	9.5	2.5	1.0	6.4

\* 출처: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비중 : 대미투자 누계금액(412억불) 대비

### (4) 미국의 업종별 대한투자(2010 누계)

(단위: 억불, %)

업종	농·축·수산·광업	제조업	서비스	전기·가스·수도·건설	합계
금액	0.7	132.9	268.8	35.5	437.8
비중	0.2	30.3	61.4	8.1	100.0

\* 출처: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 3 한·미 10대 교역품목 현황 (2010)

(단위 : 억불, MTI 4단위 기준)

순위	수출품목	금액	비중	수입품목	금액	비중
1	무선전화기	78	15.7%	반도체제조용장비	31	7.8%
2	승용차	66	13.2%	집적회로반도체	30	7.5%
3	자동차부품	41	8.2%	항공기	17	4.3%
4	집적회로반도체	34	6.9%	사료	16	4.1%
5	제트유및등유	23	4.7%	항공기부품	14	3.7%
6	타이어	11	2.3%	고철	12	2.9%
7	섬유기계	11	2.2%	기타정밀화학원료	9	2.2%
8	항공기부품	10	2.0%	곡류	7	1.7%
9	철강관	9	2.0%	기타정밀화학제품	6	1.7%
10	냉장고	8	1.7%	합성수지	6	1.6%
계	소계	291	58.9%	소계	148	37.5%
	전체	498	100%	전체	404	100%

\* 출처 : 한국무역협회



III

# 주요국과의 교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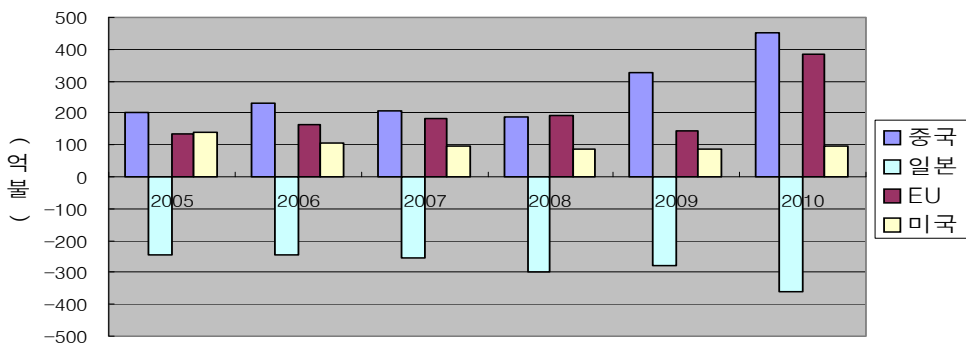
1

## 우리나라의 주요국간의 교역 통계

(단위 : 억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교역 규모 (비중)	전체	5,457 (100.0%)	6,348 (100%)	7,283 (100%)	8,573 (100%)	6,866 (100%)	8,916 (100%)
	중국	1,006 (18.4%)	1,180 (18.6%)	1,450 (19.9%)	1,683 (19.6%)	1,409 (20.5%)	1,884 (21.1%)
	일본	724 (13.3%)	785 (12.4%)	826 (11.3%)	893 (10.4%)	712 (10.4%)	925 (10.4%)
	EU	710 (13.0%)	785 (12.4%)	928 (12.7%)	984 (11.5%)	788 (11.5%)	922 (10.3%)
	미국	719 (13.2%)	768 (12.1%)	830 (11.4%)	848 (9.9%)	667 (9.7%)	902 (10.1%)
수출	전체	2,844	3,255	3,715	4,220	3,635	4,664
	중국	619	695	820	914	867	1,169
	일본	240	265	264	283	218	282
	EU	437	485	560	584	466	535
	미국	413	432	458	464	376	498
수입	전체	2,612	3,094	3,568	4,353	3,231	4,252
	중국	386	486	630	769	542	716
	일본	484	519	563	610	494	643
	EU	273	301	368	400	322	387
	미국	306	337	372	384	290	404
교역 수지	전체	232	161	147	-133	404	412
	중국	233	209	190	145	325	453
	일본	-244	-254	-299	-327	-277	-361
	EU	164	184	192	184	144	148
	미국	108	95	86	80	86	94

<주요 교역국별 교역수지 비교(2005~2010)>



## 2

## 미국의 주요국간의 교역 통계

(단위 : 억불, %)

구분	수 출			수 입			교역총액		
	국 가	금액	점유율	국 가	금액	점유율	국 가	금액	점유율
순위	전세계	92,7156	100	전세계	136,087	100	전세계	22,8803	100
	15개국	67,214	72.5	15개국	100,275	73.7	15개국	134,585	58.8
1	캐나다	17,198	18.5	중국	25,185	18.5	캐나다	38,283	16.7
2	멕시코	11,497	12.4	캐나다	21,084	15.5	중국	32,074	1.4
3	중국	6,889	7.4	멕시코	16,119	11.8	멕시코	27,617	12.1
4	일본	4,834	5.2	일본	8,183	6.0	일본	13,017	5.7
5	독일	3,844	4.1	독일	4,952	3.6	독일	8,795	3.8
6	영국	3,823	4.1	영국	3,179	2.3	영국	7,002	3.1
7	<b>한국</b>	<b>2,696</b>	<b>2.9</b>	<b>한국</b>	<b>3,107</b>	<b>2.3</b>	<b>한국</b>	<b>5,802</b>	<b>2.5</b>
8	네덜란드	2,505	2.7	프랑스	2,758	2.0	프랑스	4,780	2.1
9	브라질	2,260	2.4	대만	2,588	1.9	대만	4,573	2.0
10	싱가폴	2,159	2.3	아일랜드	2,400	1.8	브라질	4,202	1.8
11	프랑스	2,022	2.2	나이지리아	2,291	1.7	네덜란드	3,875	1.7
12	대만	1,985	2.1	베네 주엘라	2,222	1.6	벨기에	3,500	1.5
13	벨기에	1,919	2.1	인도	2,079	1.5	싱가폴	3,484	1.5
14	홍콩	1,912	2.1	말레 이시아	2,065	1.5	인도	3,375	1.5
15	스위스	1,672	1.8	사우디	2,063	1.5	이탈리아	3,073	1.3

\* 주 : 통계집계상의 차이로 수출입 액수에서 한국측 통계와 차이 보임.

\* 출처 : U.S. Census Bureau (Foreign Trade Statistics)

끝